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0358-14

[www.mafra.go.kr](http://www.mafra.go.kr)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2014. 2.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 목 차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페이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제2조(농업의 범위)		1
	제3조(쌀의 수확기)		2
	제4조(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의 산정)		2
제3조(농업인들의 소득안정시책의 마련)			3
제2장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			
제4조(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			4
제5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제2조(지급상한면적)	5
제6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제2조의2(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8
	제4조의2(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9
	제4조의3(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11
제6조의2(등록신청의 공고)			13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페이지
제7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제3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14
		제3조의2(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2
		제3조의3(조사의 항목·방법 등)	24
		제3조의4(등록증의 발급 등)	25
제8조(등록사항의 변경사항 신고 등)		제4조(등록사항의 변경 등)	26
제9조(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	제4조의4(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 요건)	제5조 삭제	29
	제5조(고정직접지불금의 산정 등)		30
제10조(목표가격의 고정 및 변경)	제6조(목표가격의 산정 등)		31
제11조(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	제6조의2(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제6조(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 요건)	32
	제7조(변동직접지불금의 산정 등)		32
제12조(현지확인조사)			34
제13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제7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	35
제13조의2(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36
제3장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제14조(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장의 직무)		38
	제9조(위원회의 회의)		38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페이지
제15조(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9
	제10조(실무위원회)		39
	제11조(간사)		40
	제12조(수당 등)		40
제16조(농가소득안정추진단)	제13조(농가소득안정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41
제4장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제17조(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등)			41
제18조(기금의 조성)	제14조(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의 조성)		42
제19조(기금의 관리·운영)	제15조(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위탁)		42
제20조(기금의 용도)	제16조(기금의 결산보고)		43
제21조(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등)			44
제22조(기금계정의 설치)			45
제23조(기금의 회계기관)			45
제24조(차입금)			46
제5장 보 칙			
제25조(직접지불제도 정보화 및 자료 요청)			46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페이지
제26조(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제8조(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47
		제9조(공개된 정보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방법 등)	49
제2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50
	제18조(보고)	제10조(보고)	52
제2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제19조(포상금의 지급)		53
제29조(벌칙)			54
부 칙	부 칙	부 칙	55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 12236호, 2014.1.14.,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20px 0;">제1장 총 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lt;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gt;</p> <p>1. "농업인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 24455호, 2013.3.23., 타법개정</p> <p>제1조(목적) 이 영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개정 2009.6.16]</p> <p>제2조(논농업의 범위) 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이란 농업인등이 소득증대를 위하여 경작하</p>	<p style="text-align: center;">농림축산식품부령 제 34호, 2013.5.31., 일부개정</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개정 2009.6.26]</p>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같은 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p> <p>2. “논농업”이란 지목(地目)과 상관없이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벼, 연근, 미나리, 왕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을 말한다.</p> <p>3. “목표가격”이란 농업인등에게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가격을 말한다.</p> <p>4. “고정직접지불금”이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과 상관없이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p> <p>5. “변동직접지불금”이란 논농업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등</p>	<p>는 농작물 또는 농업인등이 재배하는 다년생 식물을 말한다.</p> <p>② 법 제5조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의 논농업은 벼, 연근, 미나리 또는 왕골을 재배한 경우를 말한다.</p> <p>[전문개정 2009.6.16]</p> <p>제3조(쌀의 수확기) 법 제2조제3호 제5호,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쌀의 수확기는 해당 연도 10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로 한다.</p> <p>[전문개정 2009.6.16]</p> <p>제4조(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의 산정) 법 제2조제5호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쌀의 수확</p>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에게 해당 연도에 생산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p> <p>6. “논농업에 종사”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논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 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p> <p>제3조(농업인등의 소득안정시책의 마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하 “직접지불제도”라 한다)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gt;</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에 힘써야 한다. &lt;개정 2009.3.25&gt;</p>	<p>기 평균가격은 통계청에서 조사한 수확기의 월별 평균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쌀가격의 조사방법 등에 대하여 통계청장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p> <p>[전문개정 2009.6.16]</p>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③ 국가는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09.3.25]</p> <p>제2장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p> <p>제4조(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p> <p>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에 따른 국내 보조 감축약속 면제기준과 범위에서 농업 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소득보조금(이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gt;</p> <p>②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은 매년 지급 하고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으 로 구분하여 지급한다.</p>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5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p> <p>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동지법)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제외한다. &lt;개정 2007.4.11, 2008.2.29, 2008.3.21, 2009.3.25, 2011.5.30, 2013.3.23&gt;</p> <p>1.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다만,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 받은 농지로서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조(지급상한면적)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지급상한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농업인의 경우: 30만제곱미터</p> <p>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경우: 50만제곱미터</p> <p>[전문개정 2009.6.26]</p>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2. 「농지법」 제 34조·제 35조 또는 제 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신고·협약이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p> <p>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다만, 제 7조제 1항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다음 각목에 따른 지구·지역의 농지 중 보상을 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6조제 1항제 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p> <p>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p>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의 농지</p> <p>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농지</p> <p>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p> <p>4.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한 농지. 이 경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서의 제한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으로 한다.</p> <p>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한다. &lt;신설 2008.3.21, 2009.3.25&gt;</p> <p>1. 경지정리사업, 간척사업 등 농어촌정</p>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p> <p>2.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지급상한면적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lt;신설 2009.3.25, 2013.3.23&gt;</p> <p>제6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p> <p>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p>		<p>제2조의2(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p> <p>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p>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lt;개정 2009.3.25, 2013.3.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li> <li>2.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월 3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li> </ol> <p>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 35제 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여야 한다. &lt;신설 2009.3.25&gt;</p>	<p>제4조의2(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법 제 6 제2항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구 차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li> </ol>	<p>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lt;개정 2010.3.30, 2012.7.3, 2013.3.23, 2013.5.3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으로 선정된 농업인</li> <li>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업농업인(專業農業人) 또는 같은 법 제 18조에 따른 전업농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li> <li>3. 법 제7조제 7항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2년 이상 연속하여 법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농업인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농업인: 1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 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한다)에 대하여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논농</li> </ul> </li> </ol>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는 농업인과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동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p> <p>2.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4천 5백만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p> <p>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2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결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포함한다)를 직전 2년 이상 경작한 자 [본조신설 2009.6.16]</p>	<p>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p> <p>나.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5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한다)에 대하여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4천 5백만원 이상</p> <p>4.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 사망(「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여 농지에서 계속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사망한 사람과 사망 직전 2년 이상 주소를 같이 한 사망하기 전에 치료를 목적으로 그 사망한 사람의</p>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는 해당하는 농지분에 한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small>신설 2009.3.25</small></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li> <li>2.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헥타미터 미만인 자</li> <li>3.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li> <li>4.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li> </ol>	<p>제4조의3(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① 법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1천 5백만원으로 한다. 다만,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적용에서 제외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small>&lt;개정 2013.3.23&gt;</small></p> <p>[본조신설 2009.6.16]</p>	<p>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소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을 주소를 같이 한 기간에 산입한다) 농업인. 다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연도부터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등록하는 연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p> <p>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에 주소를 두는 농업인</p> <p>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p> <p>5.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자로서 「한국농어촌공사 및</p>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농지관리기금법」 제19조 또는 제4 조의 에 따라 임대 또는 위탁하였던 농지를 회수하여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 이 경우 법 제 7조제 7항에 따른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 는 연도에 법 제 5조에 따른 쌀소득등보 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농업인등 이어야 한다.</p> <p>가. 농업인: 1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 (휴 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한다) 에 대하여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등록 하기 직전 연도에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백만원 이상</p> <p>나.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5 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 (휴경하는 경 우 면적산정에서 제외한다) 에 대하여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등록하기 직전</p>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6조의2(등록신청의 공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늦어도 제7조에 따른 등록신청 접수일 7일 이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공보·계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 및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b>개정 2013.3.23</b>&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5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li> <li>2. 제6조에 따른 지급대상자</li> <li>3. 등록신청의 기간 및 방법</li> <li>4. 그 밖에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li> </ol> <p>[본조신설 2011.7.25]</p>		<p>연도에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본조신설 2009.6.26]</p>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7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경작농지가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lt;개정 2009.3.25, 2013.3.23, 2013.4.5&gt;</p> <p>② 등록신청 직전 연도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장으로부터 기존에 등록된 내용을 전산 출력한 등록신청서를 교</p>		<p>제3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이하 "등록신청서"라 한다)를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농지원부(農地原簿)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10.3.30, 2013.5.31&gt;</p> <p>1. 해당 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p> <p>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1998년1월1일부터 2000년 12월 3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p>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부받아 본인이 직접 확인·수정·서명하고, 그 밖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나 지급대상자 요건의 변동이 없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을 면제한다. &lt;신설 2013.4.5&gt;</p> <p>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내경작자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내에 주소를 둔 신청인(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결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u>과</u> 그 외의 자를 구별하여 정할 수 있다. &lt;신설 2009.3.25, 2013.3.23, 2013.4.5&gt;</p> <p>④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읍·면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내주어야</p>		<p>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같은 항 제 1호 단서 및 제 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p> <p>1) 법 제5조제 1항제 1호에 따라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p> <p>2) 법 제5조제 1항제 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p> <p>나. 법 제5조제 2항에 따라 1997년 1월 31일 이전에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농지인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p> <p>2.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p>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한다. &lt;신설 2011.7.25, 2013.4.5&gt;</p> <p>⑤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이 논농업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 2009.3.25, 2011.7.25, 2013.3.23, 2013.4.5&gt;</p>		<p>가. 제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제2조의2제4호나목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p> <p>나.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p> <p>3.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p> <p>가.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 1)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서류</p>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1) 별지 제1호의 2서식의 관내경작자 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 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 을 받아야 한다.</p> <p>2)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 분만 해당한다)</p> <p>3) 농약·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 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 의 구매분만 해당한다)</p> <p>4) 종자·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 분만 해당한다)</p> <p>5) 벼 등의 계약재배를 확인하는 서류</p> <p>6) 그 밖에 논농업에 종사함을 증명하 는 서류</p> <p>나.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내경</p>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작자 외의 자: 다음 모두의 서류</p> <p>1) 별지 제1호의 3서식의 관내경작자 외의 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받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이하 읍·면이라 한다)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p> <p>2) 가목 2)부터 6)까지 중 2개 이상의 서류</p> <p>4. 신청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가 아니라</p>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는 것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p> <p>나. 법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농지가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등록신청 직전 연도에 무단점유가 아닌 것으로 증명된 농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및 임대권·임차권의 변화가 없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p> <p>③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직전 연도에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등록을</p>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의 제출을 면제한다. &lt;신설2013. 5.3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2항제1호의 서류 면제 : 직전 연도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등록된 농지 외에 추가로 등록 신청하는 농지가 없는 경우</li> <li>2. 제2항제2호의 서류 면제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직전 연도에 제2조의 제 4호부터 제 5호까지 또는 제 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된 자가 같은 요건에 따라 등록하려는 경우</li> <li>나. 직전 연도에 제 2조의 제 4호가목 또는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여 등록된 자가 같은 요건에 따라 등록하려는 경우로서 직전 연도와 주소지의 변동이 없거나 관내에서 주소지의 변동이 있는 경우</li> </ol> </li> </ol>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다. 직전 연도에 법 제 6조제 2항제 2호에 해당하여 등록된 자가 같은 요건에 따라 등록하려는 경우. 다만 법 제 2조제 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와 주소지의 변동이 없거나 관내에서 주소지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p> <p>3. 제2항제 3호의 서류 면제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가. 주소지와 신청 대상 농지가 직전 연도와 같은 경우</p> <p>나. 신청 대상 농지가 직전 연도와 같은 경우로서 관내에서 주소지 변동이 있거나 직전 연도에 법 제 7조제 2항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 외의 자로 등록된 이후에 주소지를 신청 대상 농지 소재지로 이동하여 관내경작자가 된 경우</p> <p>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증명서류의 구체적</p>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⑥ 제5항에 따른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읍·면·동에 심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lt;신설 2009.3.25, 2011.7.25, 2013.3.23, 2013.4.5&gt;</p>		<p>인 범위 및 내용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lt;신설 2010.3.30, 2013.3.23, 2013.5.31&gt; [전문개정 2009.6.26]</p> <p>제3조의2(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lt;개정 2013.5.31&gt;</p> <p>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lt;개정 2010.3.3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지 소재지 읍·면 관할 통·리의 마을대표</li> <li>2. 해당 읍·면을 관할구역으로 하거나 사업구역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 등 생산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임직원</li> <li>3. 해당 읍·면을 관할구역으로 하거나 사업구역으로 하는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li> </ol>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p> <p>③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의 농업 종사 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li> <li>2. 심사 중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경우</li> <li>3.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li> <li>4. 그 밖에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li> </ol> <p>④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⑤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p>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 5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등록신청인이 제 6조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lt;개정 2008.2.29, 2009.3.25, 2011.7.25, 2013.3.23, 2013.4.5&gt;</p> <p>⑧ 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조사의 항목·방법 및 등록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08.2.29, 2009.3.25, 2011.7.25, 2013.3.23, 2013.4.5&gt;</p>		<p>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lt;개정 2013.3.23&gt; [본조신설 2009.6.26]</p> <p>제3조의3(조사의 항목·방법 등) ① 읍·면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이 농업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록신청 농지의 면적, 경작 여부 등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p> <p>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함께 실시할 수 있다.</p> <p>③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체육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p>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㉞계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26]</p> <p>제3조의4(등록증의 발급 등) ①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 3조의 3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그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이하 "등록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하고, 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별지 제 3호서식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는 등록 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등록증을 첨부하여 읍·면장을 거쳐 시장·군수·구</p>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8조(등록사항의 변경사항 신고 등) 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이하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라 한다)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면적이 변동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gt;</p>		<p>청장에게 등록내용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내용의 수정을 요청받으면 신청인의 수정요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다시 내주어야 한다.</p> <p>[본조신설 2009.6.26]</p> <p>제4조(등록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 8조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변경등록신청서를, 변경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 5호서식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변경등록신고서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읍·면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gt;</p>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로부터 쌀소득 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讓受)·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하는 농업인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gt;</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 2항에 따른 신고를 한 농업인등이 제 6조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해당농지에 대한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gt;</p> <p>④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 7조를 준용한다. &lt;신설 2009.3.25&gt;</p>		<p>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lt;채정 2013.3.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발급된 등록증</li> <li>2.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쌀소득 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면적의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li> <li>3. 등록사항의 변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읍·면장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제3조제2항제1호의 서류</li> <li>나. 제3조제2항제3호의 서류. 다만, 쌀소득 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변동면적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제 3조제 2항제 3호가 목1) 또는 나목 1)의 경작사실 확인서</li> </ul> </li> </ol>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만 제출하여도 된다.</p> <p>다. 제3조제2항제4호나목의 서류</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 4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등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다시 내주어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讓受)·임차 또는 사용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li> <li>2. 변경사항과 관련된 제 3조제 2항제 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다만, 읍·면장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ol>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9조(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에게 농지의 형상(形狀) 및 기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지하고 있는 농지분에 대하여만 고정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gt;</p> <p>②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액의 구체적인</p>	<p>제4조의4(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 요건)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li> <li>2. 이웃 농지와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li> <li>3. 농지 주변의 용수로 배수로를 유지 관</li> </ol>	<p>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 4항에 따른 변경등록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면장을 거쳐 신고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p> <p>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3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26]</p> <p>제5조 삭제 &lt;2009.6.26&gt;</p>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산정기준·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09.3.25&gt;</p>	<p>리할 것</p> <p>4. 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를 제거할 것</p> <p>[본조신설 2009.6.16]</p> <p>제5조(고정직접지불금의 산정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이하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고정직접지불금의 금액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금액에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농지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lt;개정 2013.3.23&gt;</p> <p>② 제1항에 따른 단위면적당 금액은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 구분하여 정하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보다 우대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p>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0조(목표가격의 고정 및 변경) ① 목표가격은 2013년산부터 2017년산까지는 쌀80킬로그램당 188,000원으로 고정하며, 5년단위로 변경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3.21, 2009.3.25, 2014.1.14&gt;</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 ①항에 따라 목표가격을 변경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lt;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gt;</p> <p>③ 제2항에 따라 변경되는 목표가격은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정해지며, 그 목표가격의 산정 방법 및 변경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09.3.25&gt;</p>	<p>③ 고정직접지불금은 해당 연도 말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6.16]</p> <p>제6조(목표가격의 산정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변경되는 목표가격(이하 변경 목표가격이라 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비교연도는 변경 목표가격을 산출하는 연도의 직전 5개 연도로 하고, 기준연도는 비교연도의 직전 5개 연도로 하며, 절단평균은 최고치 최저치를 제외한 평균(이하 '절단평균'이라 한다)으로 한다. &lt;개정 2012.7.9&gt;</p> $\text{변경 목표 가격} = \frac{\text{비교연도 수확기 쌀값의 절단평균값}}{\text{기준연도 수확기 쌀값의 절단평균값}} \times \text{변경 목표가격 산출 직전 목표가격}$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변경되는 목표가격이 최초로 적용되는 연도가 시작되기</p>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1조(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은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하여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lt;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쌀을 생산할 것</li> <li>2. 농약 및 화학비료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li> </ol> <p>② 제1항에 따른 변동직접지불금은 목표가격과 해당 연도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의 차액에 100분의 8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p>	<p>전까지 법 제14조에 따른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목표가격 변경동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gt;</p> <p>[전문개정 2009.6.16]</p> <p>제6조의2(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제4조의4에 따른 기준을 갖춘 농지에 물을 가두는 방법으로 쌀을 생산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09.6.16]</p> <p>제7조(변동직접지불금의 산정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에게 지급되는 변동직접지불금의 금액은 농림축산식품부장이 매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하여 고시하는 쌀 80킬로그램</p>	<p>제6조(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 요건)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lt;개정 2013.3.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약 : 농림축산식품부장이 고시한 생산단계의 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li> <li>2. 화학비료 : 농촌진흥청장이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시비량(施肥量)기준</li> </ol> <p>[전문개정 2009.6.26]</p>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에서 고정직접지불금을 빼고 남은 금액으로 한다. &lt;개정 2009.3.25&gt;</p> <p>③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지급액의 산정방법 및 그 지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09.3.25&gt;</p>	<p>당 금액에 1만제곱미터당 쌀의 생산량과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벼 재배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lt;개정 2013.3.23&gt;</p> <p>② 제1항에 따른 변동직접지불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고정직접지불금을 쌀 8원로 그램당 금액으로 환산할 때에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에 대한 고정직접지불금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한 고정직접지불금을 각 농지면적이 전체 농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가중평균한 금액을 사용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1만제곱미터당 쌀의 생산량(이하 "단위생산량"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제1항의 목표가격 변경주기에 따라 5년 단위로 변경하되,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비교연도는 변경 단위생산량을 산출하는 연도의 직전 5개 연도로 하고 기준연도는 비교연도의 직전 5개 연도로 한다. &lt;개정 2012.7.9&gt;</p>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2조(현지확인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등을 제9조제1항 및 제1 조제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gt;</p> <p>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나 토양성분검사 또는 재배식물에 대한 농약잔류검사를 할 수 있다. &lt;개정 2009.3.25&gt;</p>	$\text{변경 단위 생산량} = \frac{\text{비교연도 쌀 생산량의 절단평균값}}{\text{기준연도 쌀 생산량의 절단평균값}} \times \frac{\text{변경 단위생산량 산출 직전 단위생산량}}$ <p>④ 변동직접지불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6.16]</p>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3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 또는 수령자가 제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 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또는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lt;개정 2009.3.25, 2013.3.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경우</li> <li>2. 제6조제3항제 1호 또는 제 2호에 따른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li> <li>3. 제6조제3항제 3호 또는 제 4호에 따른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li> <li>4. 제9조제1항 또는 제 11조제 1항에 따른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li> </ol>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 1항제 1호에</p>		<p>제7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 법 제13조제 3항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6.26]</p>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해당하여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 7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gt;</p> <p>③ 제1항에 따른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기준 및 제 8항에 따른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gt;</p> <p>제13조의2(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 13조제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도 불구하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3 조제 1항제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2배</p>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lt;개정2013.3.23&gt;</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징수대상 금액을 납부기한 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다. &lt;개정 2011.7.25, 2013.3.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li> <li>2.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이 지난 다음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li> </ol>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제 2항에 따른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p>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못한다. &lt;개정 2013.3.23&gt;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징수대상 금액 및 가산금을 납부의무자가 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                      [본조신설 2009.3.25]</p> <p>제3장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p> <p>제14조(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lt;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gt;                      ②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lt;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gt;                      1.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에 관한 기본정책</p>	<p>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9.6.16]</p> <p>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과 제도에 관한 사항</p> <p>2. 목표가격·고정직접지불금·변동직접지불금의 설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p> <p>3.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p> <p>4. 제19조에 따른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p> <p>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15조(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lt;개정 2009.3.25&gt;</p> <p>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lt;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gt;</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되는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p> <p>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이 아닌 유관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09.6.16]</p> <p>제10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1. 기획재정부차관·산업통상자원부차관·안정행정부차관 및 농림축산식품부차관</p> <p>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자</p> <p>가. 농업인단체의 대표 5명 이내</p> <p>나. 「소비자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대표 및 언론인 5명 이내</p> <p>다. 농업 및 경제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5명 이내</p> <p>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b>개정 2009.3.25&gt;</b></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개정 2009.3.25&gt;</b></p>	<p>[전문개정 2009.6.16]</p> <p>제11조(간사) ①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 담당 실 국장이 된다. &lt;개정 2013.3.23&gt;</p> <p>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li> <li>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li> <li>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등</li> </ol> <p>[전문개정 2009.6.16]</p> <p>제12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과 제9조제4항에 따라 출석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6조(농가소득안정추진단) ①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가소득안정추진단을 둔다. &lt;개정 2008.2.29, 2013.3.23&gt;</p> <p>② 농가소득안정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정 2009.3.25&gt;</p> <p>제4장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p> <p>제17조(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등)</p> <p>① 정부는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변</p>	<p>[전문개정 2009.6.16]</p> <p>제13조(농가소득안정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p> <p>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농가소득안정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단장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p> <p>② 단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다. &lt;개정 2013.3.23&gt;</p> <p>③ 단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명을 받아 추진단의 사무를 총괄한다. &lt;개정 2013.3.23&gt;</p> <p>[전문개정 2009.6.16]</p>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동직접지불금의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lt;개정 2009.3.25&gt;</p> <p>제18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lt;개정 2009.3.25&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7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li> <li>2. 「양곡관리법」 제13조의 2에 따른 수입이익금</li> <li>3. 기금의 운용수익금</li> <li>4. 한국은행·금융기관·다른 기금 또는 회계로부터 들여온 차입금</li> <li>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li> </ol> <p>제19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lt;개정</p>	<p>제14조(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의 조성) 법 제1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양곡관리법」 제3조의 2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이 법 제17조에 따라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되기 전에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말한다.</p> <p>[전문개정 2009.6.16]</p> <p>제15조(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9조제 2항</p>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2008.2.29, 2013.3.23&gt;</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농림수산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gt;</p> <p>③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09.3.25&gt;</p> <p>제2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lt;개정 2008.2.29, 2009.3.25,</p>	<p>에 따라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농림수산 관련 법인(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한다. &lt;개정 2013.3.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업무</li> <li>2.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li> <li>3. 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li> <li>4. 그 밖에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li> </ol> <p>②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각 호의 사무처리에 드는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p> <p>[전문개정 2009.6.16]</p> <p>제16조(기금의 결산보고)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p>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2013.3.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li> <li>2.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li> <li>3. 제12조제2항에 따른 현지확인조사, 토양성분검사 또는 농약잔류검사에 필요한 경비</li> <li>4.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li> <li>5. 그 밖에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li> </ol> <p>제21조(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lt;개정 2009.3.25, 2013.3.23&gt;</p> <p>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면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p>	<p>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gt;</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제출받은 기금결산보고서를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gt;</p> <p>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계획 및 실적에 관한 서류</li> <li>2. 대차대조표</li> <li>3. 손익계산서</li> <li>4.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li> <li>5.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li> </ol> <p>[전문개정 2009.6.16]</p>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다. &lt;개정 2009.3.25&gt; [제목개정 2009.3.25]</p> <p>제22조(기금계정의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gt;</p> <p>제23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gt;</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 19조제 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면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p>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한다. &lt;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gt;</p> <p>제24조(차입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금융기관·다른 기금 또는 회계로부터 자금을 차입(借入)할 수 있다 . 재정 2008.2.29, 2009.3.25, 2013.3.23&gt;</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보 칙</p> <p>제25조(직접지불제도 정보화 및 자료 요청)</p> <p>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에 대</p>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한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lt;개정 2009.3.25, 2013.3.23&gt;</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lt;신설 2009.3.25, 2013.3.23&gt;</p> <p>[제목개정 2009.3.25]</p> <p>제26조(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p> <p>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p>		<p>제8조(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는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p>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따라 매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업인: 성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금액</li> <li>2.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금액</li> </ol> <p>②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제1항에서 공개한 정보 외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을 마감한 날</li> <li>2. 법 제9조에 따라 고정직접지불금을 지급한 날</li> <li>3. 법 제11조에 따라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한 날</li> </ol> <p>② 제1항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 또는 수령자의 정보를 열람하려는 자는 열람 목적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 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p>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 1항에서 공개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이의신청자 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내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3.3.23&gt;</p> <p>④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 6조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확인된 농업인등은 제 7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3.25] [중전 제26 조는 제27 조로 이동&lt;2009.3.25&gt;]</p>		<p>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lt;개정 2013.3.23&gt; [본조신설 2009.6.26]</p> <p>제9조(공개된 정보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방법 등) 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에 대한 열람기간 중 열람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 및 해당 농지의 경작자에게 알려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lt;개정 2013.3.23&gt; [본조신설 2009.6.26]</p>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gt;</p> <p>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lt;개정 2005.12.29, 2008.2.29, 2009.3.25, 2013.3.23&gt;</p> <p>[제26조에서 이동 &lt;2009.3.25&gt;]</p>	<p>제1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 27조제 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lt;개정 2013.3.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 5조제 1항제 1호 및 제 3호에 따른 논농업 이용가능 여부의 인정</li> <li>2. 법 제 7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및 등록증 발급</li> <li>3. 법 제 8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변경등록 및 지급대상 농지의 양수(讓受)·임차·사용차使用借에 관한 신고 수리</li> <li>4. 법 제 9조에 따른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li> <li>5. 법 제 11조에 따른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li> <li>6. 법 제 12조제 2항에 따른 토양성분검사</li> <li>7. 법 제 13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li> </ol>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불금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금지 및 등록제한</p> <p>8. 법 제13조의2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징수</p> <p>9. 법 제26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의 정보공개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조사·통보</p> <p>10. 법 제28조에 따른 신고의 처리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 27조제 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 2항에 따른 농약잔류검사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lt;개정 2013.3.23&gt;</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 27조제 2항에 따라 법 제12조제 2항에 따른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등에 대한 현지확인조사의 권한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 &lt;개정 2013.3.23&gt;</p>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전문개정 2009.6.16]</p> <p>제18조(보고) ① 시장·군수 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쌀소득등보전직접 지불금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gt;</p> <p>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약잔류검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gt;</p> <p>③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지확인조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gt;</p> <p>[전문개정 2009.6.16]</p>	<p>제10조(보고) 영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전자정부법」 제26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고를 포함한다)는 보고대상 업무가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09.6.26]</p>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논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면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를 주무관청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p> <p>[본조신설 2009.3.25]</p>	<p>제19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28조에 따라 논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면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은 건당 1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lt;개정 2013.3.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고대상자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한 사람</li> <li>2. 이미 신고된 자(논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면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만 해당한다)를 신고한 사람</li> <li>3.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li> <li>4.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li> </ol> <p>② 제1항에 따라 한 사람이 지급받을 수</p>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li> <li>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거나 제</li> </ol>	<p>있는 포상금의 한도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100만원으로 한다.</p> <p>③ 포상금은 해당 연도의 고정직접지불금을 지급한 다음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한 경우에만 지급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p> <p>&lt;개정 2013.3.23&gt; [본조신설 2009.6.16]</p>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p> <p>3.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등록신청 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증명하여 준 농지소재지의 거주자</p> <p>4.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p> <p>[본조신설 2009.3.25]</p> <p>부 칙 &lt;제7433호, 2005.3.31&gt;</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20조제 호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심의에 관한 특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정하는 목표가</p>	<p>부 칙 &lt;제18926호, 2005.6.30&gt;</p> <p>①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 (다른 법령의 개정) 농산물의생산자를 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7호를 삭제한다.</p>	<p>부 칙 &lt;제1503호, 2005.7.1&gt;</p> <p>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격·고정직접지불금 또는 변동직접지불금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정할 수 있다.</p> <p>제3조(쌀소득보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쌀소득보전기금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으로 본다.</p> <p>제4조(쌀소득보전기금의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쌀소득보전기금의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의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p> <p>제5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에 관한 경과</p>	<p>제3조제2항중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및 논농업직접지불제도”를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로 한다.</p> <p>제4장(제24조 내지 제34조)을 삭제한다.</p> <p>제35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li> <li>2. 환경농업보조금의 선정신청에 관한 사항</li> <li>3. 기타 환경농업보조금 지급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li> </ol> <p>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36조(소요경비의 지급) 농림부장관은 공사에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쌀소득보전기금의 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나 그 규정</p>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쌀소득보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한 2004년산 쌀에 대한 쌀소득보전금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p> <p>제6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하여 논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 및 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하지</p>	<p>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 칙 &lt;제19513호, 2006.6.12&gt;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농림부 소속 3 급 공무원을 “농림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p>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아니한다.</p> <p>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의2제2항중 “양곡관리특별회계 틀 “양곡관리특별회계,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 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으로 한다.</p> <p>②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2의 제13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34.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p> <p>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쌀소득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p>	<p>⑭내지 ⑳생략</p>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로 본다.</p> <p>부 칙 &lt;제7775호, 2005.12.29&gt;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 . &lt;생략&gt; . . .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p>	<p>부 칙 &lt;제20677호, 2008.2.29&gt;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p> <p>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농림부 차관보”를 “농림수산식품부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p>	<p>부 칙 &lt;제1호, 2008.3.3&gt;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 6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⑤부터 ⑥까지 생략</p>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⑩ 생략</p> <p>제5조 생략</p> <p>부 칙 &lt;제8352호, 2007.4.11&gt; (농지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p> <p>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p>	<p>재정부장관"으로 한다.</p> <p>제4조 및 제18 조제 항부터 제 항까지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물부령"으로 한다.</p> <p>제5조제1항·제2항, 제6 조제 항 제 조제 항, 제13조제 2항·제 3항, 제 15조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 항·제 항 제7 조제 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 항 및 제8 조제1항부터 제3 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물부장관"으로 한다</p> <p>⑳부터 ㉟까지 생략</p> <p>부 칙 &lt;제20854호, 2008.6.20&gt;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부 칙 &lt;제37호, 2008.11.18&gt;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 등을 위한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⑧ 생략            ③⑨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농지법」 제 36조 · 제 37조 또는 제45조”를 “「농지법」 제4 조 · 제5 조 또는 제43조”로 한다.            ④⑩ 내지 ⑦⑦ 생략</p> <p>제16조 생략</p> <p>부 칙 &lt;제8852호, 2008.2.29&gt;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과 동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3조제 2호에 따른 농업인과 같은 법 제 28조 및 제 2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⑪부터 ⑫까지 생략</p> <p>제6조 생략</p> <p>부 칙 &lt;제21538호, 2009.6.16&gt;</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lt;제71호, 2009.6.26&gt;</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한다. 다만, . . . &lt;생략 . . . 부칙 제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⑨까지 생략            ⑩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 기획재정부차관 · 외교통상부차관 · 행정안전부차관 및 농림수산식품부차관</p> <p>제2조제3호,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7조제2항 · 제3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p>	<p>제2조(경과조치) 2009년 10월 1일까지는 제2조의2 및 제4조의3의 개정규정 중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본다.</p>	<p>제2조(법 적용에 따른 경과조치) 2009년 10월 1일까지는 제2조 및 제2조의2 제1호의 개정규정 중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각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본다.</p> <p>제3조(행정처분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4 조제 항제 호,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 호 제19조제1항·제2항, 제 20조제 호, 제 21조제1항, 제22조, 제23 조제 항·제 항 전단 제24조 및 제26조제 항·제 항 중 농림부 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p> <p>제7조제1항·제4항, 제8 조제1 항·제2 항 제9조제1항, 제 11조제1항제 호·제 호 및 제13조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 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p> <p>제14조제1항 및 제6 조제 항 중" 농림부 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p> <p>㉮ 부터 ㉮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부 칙 &lt;제8929호, 2008.3.21&gt;</p>	<p>부 칙 &lt;제23940호, 2012.7.9&gt;</p>	<p>부 칙 &lt;제117호, 2010.3.30&gt;</p>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 (등록제한에 대한 특례) 제 5조제 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규로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이 이 법 시행 전에 제 13조제 1항제 1호의 사유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 7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다.</p> <p>부 칙 &lt;제9276호, 2008.12.29&gt;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변동직접지불금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단제곱미터당 쌀의 생산량은 그 수확기가 2013년인 쌀부터 적용한다.</p> <p>부 칙 &lt;제24455호, 2013.3.23&gt;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9까지 생략</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lt;제292호, 2012.7.3&gt;</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2제 4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산 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신청한 사람부터</p>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⑨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6조제2항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p> <p>⑩ 부터 ⑮ 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p>부 칙 &lt;제9531호, 2009.3.25&gt;</p>	<p>⑤0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 후단, 제4조의3제2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항·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제4호, 제16조제1항·제2항·제3항, 제18조제1항부터 제9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p> <p>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p> <p>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p> <p>⑤1 부터 ⑤6 까지 생략</p>	<p>적용한다.</p> <p>부 칙 &lt;제1호, 2013.3.23&gt;</p>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지급대상자에 대한 특례) 제6조제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11년까지 제7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경우 지급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한 자</li> <li>2.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등록한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한 자</li> </ol> <p>제3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금액 지급 또는 등록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에 이 법의 시행 전에 지급한 쌀소득등</p>		<p>(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p> <p>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㉘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 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3조의2제6항, 제4조제항 같은 조 제2항제3호나목 단서, 제 5조제호, 제8조제3항, 제9조제3항, 별표 2제 2호(바목1)가) 및 별지 제4호서식 제 2쪽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p>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보전직접지불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정상 지급한 것으로 본다.</p> <p>부 칙 &lt;제10764호, 2011.5.30&gt; (택지개발촉진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다목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⑰부터 ⑳까지 생략</p>		<p>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p> <p>부 칙 &lt;제34호, 2013.5.31&gt;</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 법률 제11741호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4호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부 칙 &lt;제10946호, 2011.7.25&gt;</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경과한 징수대상 금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금부터 적용한다.</p> <p>부 칙 &lt;제11690호, 2013.3.23&gt;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p>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단, 제27조제1항·제2항 및 제28조 중 농림수산물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p> <p>제5조제3항, 제6조제 항제 호 제 조의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 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제7항, 제8조제 항·제 항, 제11조제1항제2호, 제3조제 항 제6조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 항 후단 중 "농림수산물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p> <p>제15조제2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 및 농림수산물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안전행정부차관 및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한다.</p> <p>제16조제1항 중 "농림수산물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p> <p>㉮부터 ㉮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부 칙 &lt;제11741호, 2013.4.5&gt;</p> <p>이 법은 공포 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 이내에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lt;제12236호, 2014.1.14&gt;</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생산된 쌀의 경우에는 쌀” “2013년산부터 2017년산까지는 쌀 80 킬로그램당 188,000 원으로”로 한다.</p>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부 칙 &lt;제11230호, 2012.1.26&gt;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p> <p>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p>		

[별표1] 삭제 <2009.6.26>

[별표2] <개정 2013.3.23>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제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행정 처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한도를 초과할 수 없고, 등록제한 기간은 연 단위로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지급제한기준	등록제한기간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호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5년
나. 법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농업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법 제13조 제1항제2호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다. 법 제6조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법 제13조 제1항제3호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위반사항	근거법령	지급제한기준	등록제한기간
2)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p>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p> <p>1)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p> <p>2)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p> <p>가) 이웃 농지와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p> <p>나) 농지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p> <p>다) 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를 제거할 것</p> <p>3) 2)가)부터 다)까지 중 2개 이상을 위반한 경우</p>	법 제13조 제1항제4호	<p>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p> <p>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1/2 감액</p> <p>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p>	
<p>마.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p> <p>-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춘 농지에 물을 가두는 방법으로 쌀을 생산할 것</p>	법 제13조 제1항제4호	해당 농지의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p>바.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p> <p>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경우</p> <p>가) 농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생산단계의 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p> <p>나) 화학비료: 농촌진흥청장이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시비량 기준</p> <p>2) 1)가) 및 나)를 모두 부적합으로 판정을 받은 경우</p>	법 제13조 제1항제4호	<p>해당 농지의 변동직접지불금 1/2 감액</p> <p>해당 농지의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p>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5.31>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①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② 신청 농지	농지 소재지			③ 지목	④ 소유 (자, 타, 공유)	⑤ 면적(m <sup>2</sup> )		⑥ 농지이용면적(m <sup>2</sup> )			대상농지 여부			
	읍·면	리·동	지번 (임시 지번)			농업진흥 지역 안	농업진흥 지역 밖	벼 재배	벼 외 작물 재배	휴경	⑦ 1998년~ 2000년 재배작물	⑧ 1997년 이전 논농업 기간	⑨ 농지전용 등 여부	⑩ 개발사업 예정지 등 보상 여부
				합계										
	⑪ 입금계좌			은행	계좌번호			⑫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수령 횟수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

국세청에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⑬ 읍장·면장·동장 확인란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금액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공개됩니다.

※ 첨부서류 및 작성방법(제2쪽 및 제3쪽 참고)

수수료: 없음

297mm×210mm[백상지 80g/m<sup>2</sup>(재활용품)]

첨부서류

※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면장·동장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등본 등으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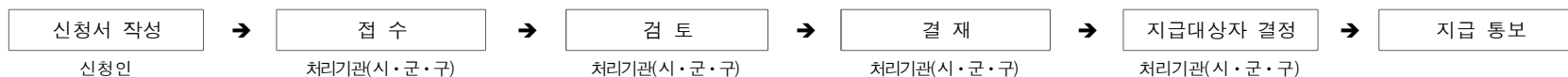
1. 해당 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직전 연도에 등록된 농지 외에 추가로 등록 신청하는 농지가 없는 경우 면제)
  - 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같은 항 제1호 단서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1)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2) 법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 나.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농지인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직전 연도에 제2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 및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된 자(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와 주소지의 변동이 없거나 관내에서 주소지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 한정)가 같은 요건에 따라 등록하려는 경우 및 직전 연도에 제2조의2제4호가목 또는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여 등록된 자가 같은 요건에 따라 등록하려는 경우로서 직전 연도와 주소지의 변동이 없거나 관내에서 주소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면제]
  - 가. 시행규칙 제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시행규칙 제2조의2제4호나목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나.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민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3.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주소지와 신청 대상 농지가 직전 연도와 같은 경우 및 신청 대상 농지가 직전 연도와 같은 자로서 관내에서 주소지 변동이 있거나 직전 연도에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 외의 자로 등록된 이후 주소지를 신청 대상 농지 소재지로 이동하여 관내경작자가 된 경우 면제)
  - 가.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 1)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서류
    - 1)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관내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2)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만 해당한다)
    - 3) 농약·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
    - 4) 종자·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
    - 5) 벼 등의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 6) 그 밖에 논농업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서류
  - 나.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 외의 자: 다음 모두의 서류
    - 1)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관내경작자 외의 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받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 2) 가목2)부터 6)까지 중 2개 이상의 서류
4. 신청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법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 나. 법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농지가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등록신청 직전 연도에 무단 점유가 아닌 것으로 증명된 농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및 임대권·임차권의 변화가 없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작성 방법

- ①란은 신청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록합니다.
- ②란은 신청인이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 ③란은 신청농지의 공부(公簿)상의 지목을 기록합니다.
- ④란은 농지 소유를 기준으로 본인 소유의 농지를 본인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자"로, 타인 소유의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경우에는 "타"로, 본인을 포함한 공동소유의 농지를 본인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공유"로 기록합니다.
- ⑤란은 신청농지의 면적을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면적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면적으로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 ⑥란은 신청농지의 벼 재배면적, 벼 외 작물 재배면적 또는 휴경하는 면적을 기록합니다.
- ⑦란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의 신청농지에서 "벼", "미나리", "연근", "왕골" 중 재배한 품목을 기록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기타"로 기록합니다.
- ⑧란은 ⑦란에 "기타"로 기록한 경우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벼, 미나리, 연근 또는 왕골을 재배한 기간을 기록합니다.
- ⑨란은 신청농지가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또는 농지전용합의를 거친 농지인 경우에는 "×"로 기록하고, 그렇지 아니한 농지인 경우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 ⑩란은 신청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보상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 로, 보상을 받은 경우는 "×"로 기록하며, 해당되지 아니하는 농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가. 하천구역 안의 농지	나.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
다. 산업단지 또는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농지	라.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 ⑪란은 신청인의 거래 은행 및 계좌번호를 기록합니다.
- ⑫란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한 횟수를 기록합니다.
- ⑬란은 신청인의 신청면적, 벼 재배면적, 신청농지, 지급대상자의 요건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읍장·면장·동장이 확인합니다.

### 처리 절차



### 관내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농지	농지 소재지			면적(m <sup>2</sup> )	농지이용면적(m <sup>2</sup> )		
	읍·면·동	리·통	지번		벼 재배	벼 외 작물재배	휴경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신청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의 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리(통)장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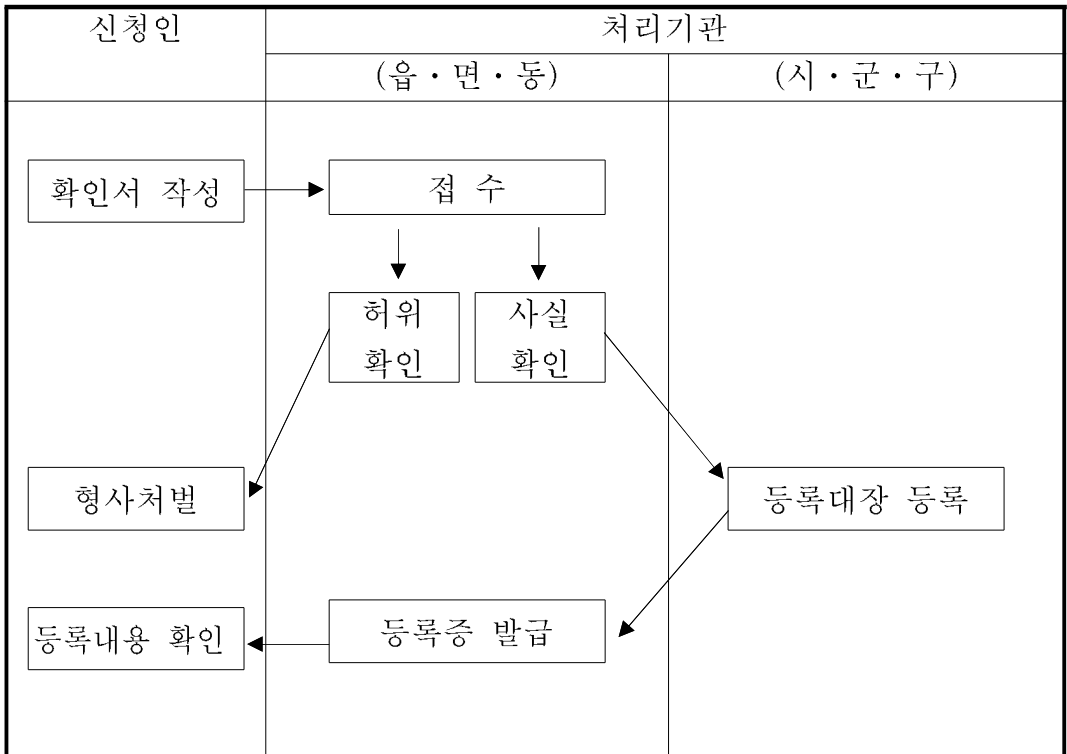
\* 위 경작사실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경작사실 확인 안내

(뒤쪽)

제출 및 처리기관	읍·면·동, 시·군·구
근거 법규	<p>○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쌀소득등보진직접 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① (생 략)</p> <p>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농지원부(農地原簿)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2. (생 략)</p> <p>3.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p> <p>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내경작자: 1)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서류</p> <p>1)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관내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p> <p>2) ~ 6) (생 략)</p> <p>나. (생 략)</p> <p>4. (생 략)</p> <p>③ (생 략)</p>

※ 이 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관내경작자 외의 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농지	농지 소재지			면적(m <sup>2</sup> )	농지이용면적(m <sup>2</sup> )		
	읍·면·동	리·통	지번		벼 재배	벼 외 작물재배	휴경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신청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의 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농지 소재지 ○○리(통)장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 농지 소재지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받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농지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위 경작사실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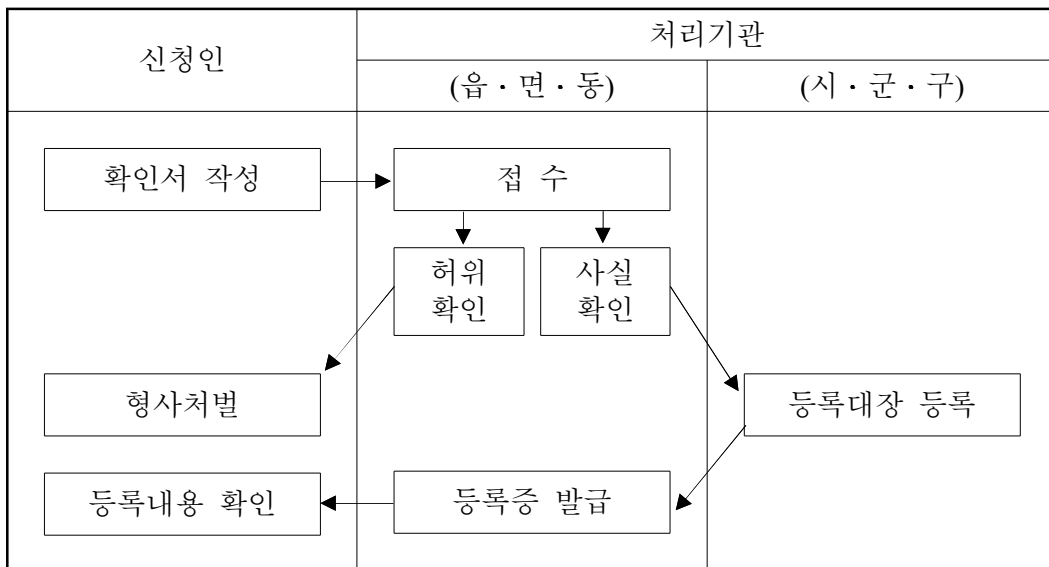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경작사실 확인 안내

(뒤쪽)

제출 및 처리기관	읍·면·동, 시·군·구
근거법규	<p>○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① (생략)</p> <p>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농지원부(農地原簿) 또는 토지대장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2. (생략)</p> <p>3.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가. (생략)</p> <p>나.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내경작자 외의 자: 다음 모두의 서류</p> <p>1)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관내경작자 외의 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소재지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받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p> <p>2) (생략)</p> <p>4. (생략)</p> <p>③ (생략)</p>

※ 이 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등록번호 제            호 <b>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b>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지급 대상 농지	농지 소재지			농업진흥지역 구분		농지이용면적(m <sup>2</sup> )		
	읍·면	리·동	지번 (임시 지번)	안(m <sup>2</sup> )	밖(m <sup>2</sup> )	벼 재배	벼 외 작물재배	휴경

위 신청인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쌀 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 등록증을 받은 후 등록 내용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면적이 변동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년 ○○월 ○○일까지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등록하거나 수령한 때에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제한받을 수 있으며, 제13조의2에 따른 부당이득금·가산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제29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등록증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내용에 대한 확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3.23>

(제1 쪽)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45일																				
①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소															
② 신청 농지	농지 소재지			③ 지목	④ 소유 (자, 타, 공유)	변경 전					변경 후					대상농지여부				
	읍·면	리·동	지번 (임시 지번)			⑤ 면적(m <sup>2</sup> )	⑥ 농지이용면적(m <sup>2</sup> )					⑦ 면적(m <sup>2</sup> )	⑧ 농지이용면적(m <sup>2</sup> )					⑨ 1998년 ~ 2000년 재배 작물	⑩ 1997년 이전 논농업 기간	⑪ 농지 전용 등 여부
					농업 진흥 지역 안	농업 진흥 지역 밖	벼 재배	벼 외 작물 재배	휴경	농업 진흥 지역 안	농업 진흥 지역 밖	벼 재배	벼 외 작물 재배	휴경						
	합계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⑭ 읍·면·동장 확인란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금액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공개됩니다.															수수료					
※ 작성요령 및 구비서류 (제2쪽 참고)															없음					

297mm×210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신청인 작성요령

- ①란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신청인(법인을 포함한다)의 인적사항을 기록합니다.
- ②란은 농지면적, 재배면적이 변경된 농지, 신규 신청하는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및 등록대장에 등록된 농지 중 양수(양도)·임차(임대)·사용차(사용대)한 농지를 대상으로 기록합니다.
- ③란은 신청농지의 공부(公簿)상의 지목을 기록합니다.
- ④란은 농지소유를 기준으로 본인 소유의 농지를 본인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자"로, 타인 소유의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경우에는 "타"로, 본인을 포함한 공동소유의 농지를 본인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공유"로 기록합니다.
- ⑤란은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농지의 변경 전 면적을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면적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면적으로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 ⑥란은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농지의 변경 전 비 재배면적, 비 외 작물 재배면적 또는 휴경하는 면적을 기록합니다.
- ⑦란은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농지의 변경 후 면적을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면적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면적으로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 ⑧란은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농지의 변경 후 비 재배면적, 비 외 작물 재배면적 또는 휴경하는 면적을 기록합니다.
- ⑨란은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농지에서 "벼", "미나리", "연근", "왕골" 중 재배한 품목을 기록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기타"로 기록합니다.
- ⑩란은 ⑨란에 "기타"로 기록한 경우 1997년 12월 31일 이전 비·미나리·연근 또는 왕골을 재배한 기간을 기록합니다.
- ⑪란은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농지 중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또는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는 "x"로 기록하고, 그렇지 않은 농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 ⑫란은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보상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 로, 보상을 받은 경우는 "x"로 기록하며, 해당되지 아니하는 농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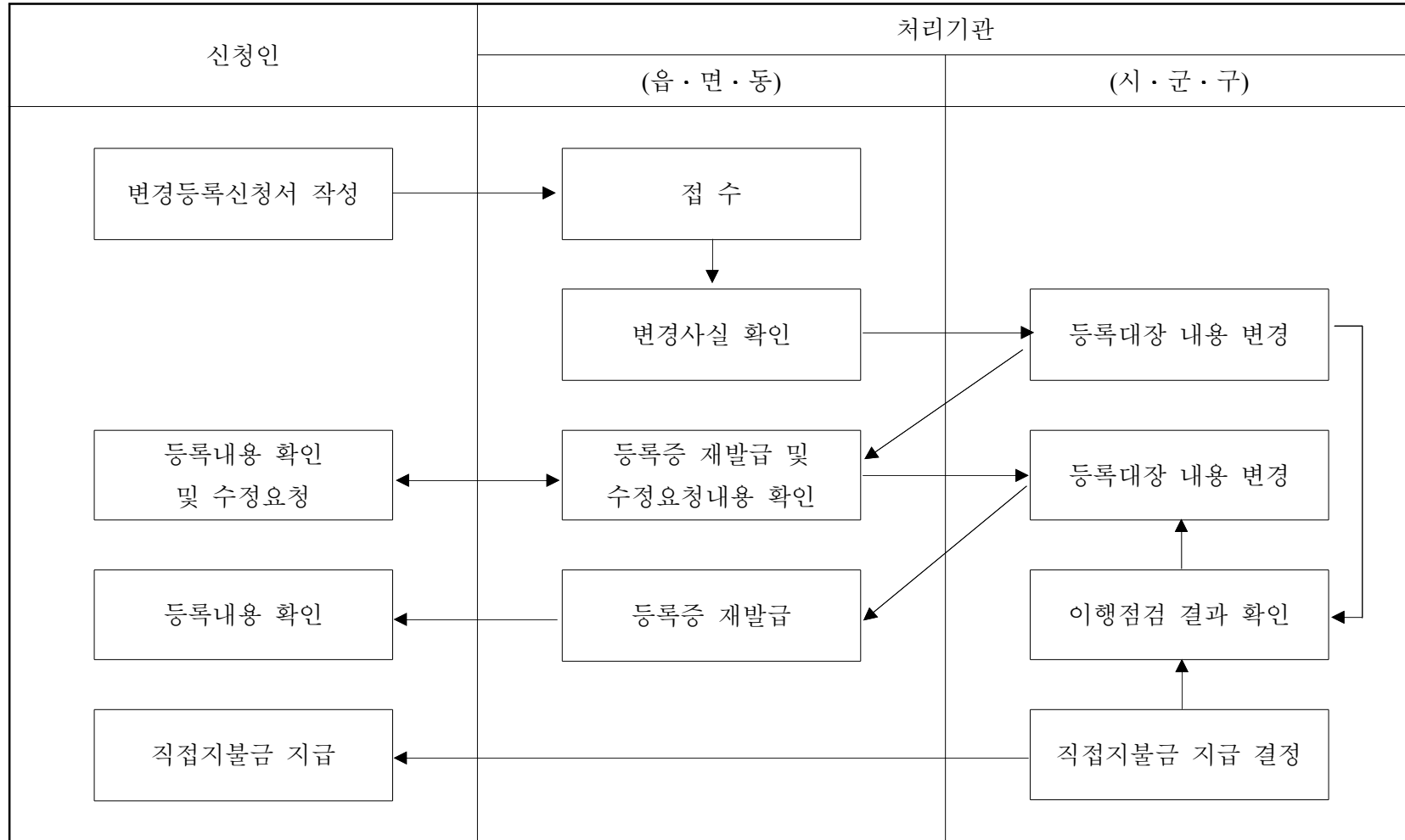
가. 하천구역 안의 농지	나.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
다. 산업단지 또는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농지	라.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 ⑬란은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농지를 양도·임대·사용대한 농업인의 성명을 기록합니다.
- ⑭란은 신청인의 신청면적, 비 재배면적, 신청농지·지급대상자의 요건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읍·면·동장이 확인합니다.

※ 구비서류 (3호의 서류는 읍·면·동장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 1. 발급된 등록증
- 2.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면적의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 등록사항의 변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해당 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같은 항 제1호 단서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나) 법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 2)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농지인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 나.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다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변동면적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1)가) 또는 2)가)의 경작사실확인서만 제출하여도 된다)
    -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내경작자: 가)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서류
      - 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관내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나)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만 해당한다)
      - 다) 농약·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
      - 라) 종자·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
      - 마) 비 등의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 바) 그 밖에 논농업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서류
    -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내경작자 외의 자: 다음 모두의 서류
      - 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관내경작자 외의 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받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 나) 1)나)부터 바)까지 중 2개 이상의 서류
- 4. 신청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 가) 법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농지가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 이 변경등록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3쪽)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변경등록신고서											처리기간
											45일
① 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소			
② 신청농지	농지 소재지			③ 지목	④ 소유 (자, 타, 공유)	⑤ 면적(m <sup>2</sup> )		⑥ 농지이용면적(m <sup>2</sup> )			⑦ 전(前)경작자
	읍·면	리·동	지번 (임시 지번)			농업진흥 지역 안	농업진흥 지역 밖	벼 재배	벼 이외 작물재배	휴경	
	⑧ 입금계좌			은행	계좌번호		⑨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수령 횟수			회	
<p>「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변경등록신고를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인)</p> <p>국세청에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인)</p> <p>○○○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⑩ 읍·면·동장 확인란
<p>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금액 등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공개됩니다.</p>											수수료
※ 작성요령 및 구비서류 (제2쪽 참고)											없음

(제2 쪽)

※ 작성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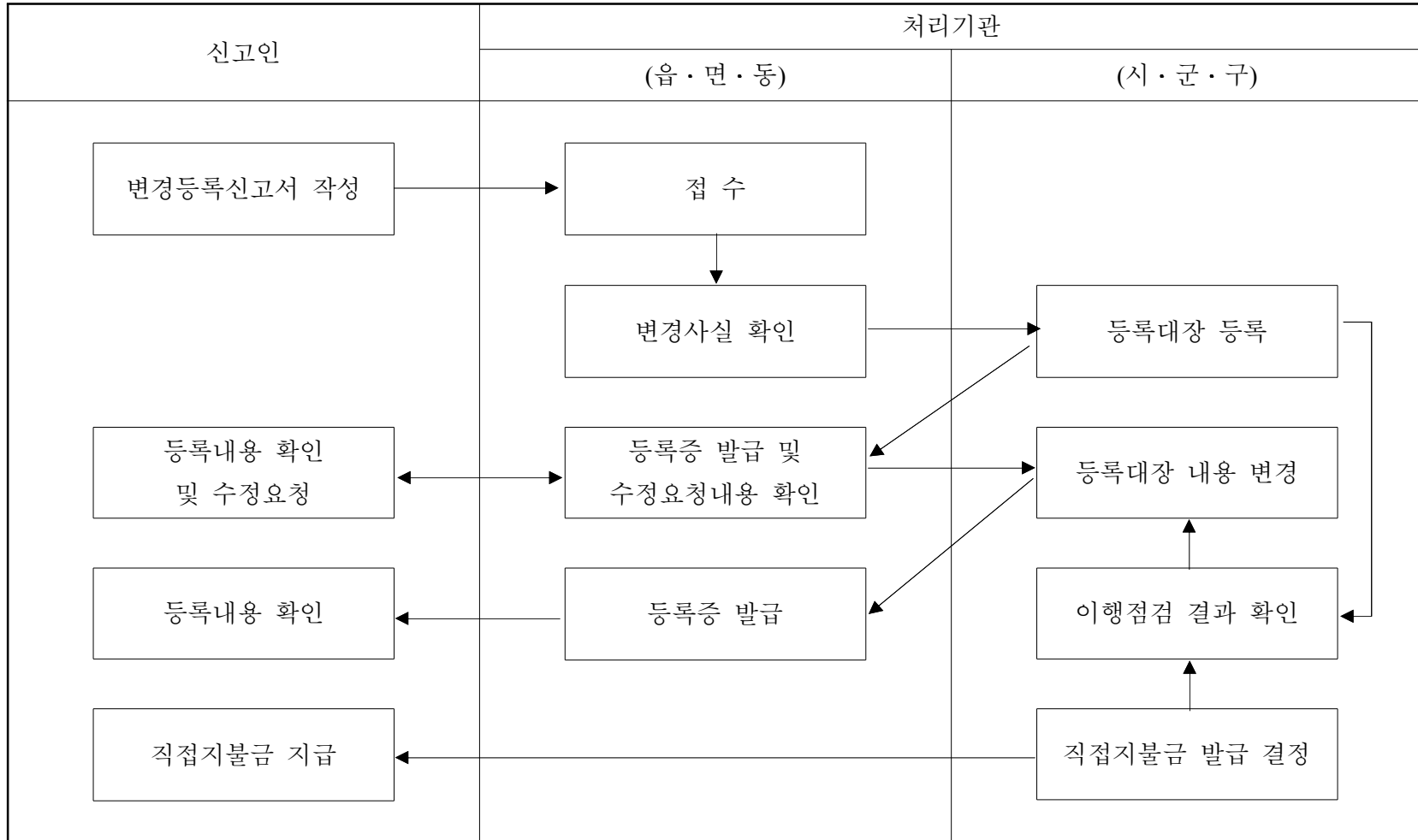
- ①란은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로부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 임차 또는 사용차하는 신고인(법인을 포함한다)의 인적사항을 기록합니다.
- ②란은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로부터 양수, 임차 또는 사용차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대상으로 기록합니다.
- ③란은 변경등록사항을 신고하려는 농지의 공부(公簿)상의 지목을 기록합니다.
- ④란은 변경등록사항을 신고하려는 농지의 소유를 기준으로 본인 소유의 농지를 본인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자”로, 타인 소유의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경우에는 “타”로, 본인을 포함한 공동소유의 농지를 본인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공유”로 기록합니다.
- ⑤란은 변경등록사항을 신고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면적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면적으로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 ⑥란은 변경등록사항을 신고하려는 농지의 벼 재배면적, 벼 외 작물 재배면적 또는 휴경하는 면적을 기록합니다.
- ⑦란은 변경등록사항을 신고하려는 농지를 양도·임대 또는 사용대한 농업인의 성명을 기록합니다.
- ⑧란은 신고인의 거래 은행 및 은행계좌번호를 기록합니다.
- ⑨란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신고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한 횟수를 기록합니다.
- ⑩란은 신고인의 신청면적, 벼 재배면적, 신청농지·지급대상자의 요건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읍·면·동장이 확인합니다.

※ 구비서류 (제2호의 서류 중 읍·면·동장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1.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讓受)·임차 또는 사용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사항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1) 시행규칙 제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시행규칙 제2조의2제4호나목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2)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나.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내경작자: 가)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서류
      - 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관내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나)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만 해당한다)
      - 다) 농약·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
      - 라) 종자·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
      - 마) 벼 등의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 바) 그 밖에 논농업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서류
    -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내경작자 외의 자: 다음 모두의 서류
      - 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관내경작자 외의 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받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 나) 1)나)부터 바)까지 중 2개 이상의 서류
- 다. 신청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 1) 법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 2) 법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농지가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 이 변경등록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3쪽)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농업경영체 [ ] 등록 신청서 (농업인용)  
[ ] 변경

※ 제6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11쪽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유형	농가(법인)고유번호	경영주 번호

1. 일반현황

① 경영주인 농업인	성명	국적	국내	주민등록번호
			국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② 주소	주민등록지(신고거소지)		
③ 영농이력	③-1 취업동기	[ ] 신규취업 [ ] 귀농 [ ] 겸업농		
	③-2 농업종사기간	년      개월 (농업 시작 연월 :   년   월)		
④ 직불금 등 수령계좌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⑤ 경영주 외의 농업인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경영주와의 관계	영농이력	
				취업동기	농업종사 기간
				[ ] 신규취업 [ ] 귀농 [ ] 겸업농	년   개월(농업시작연월:   년   월)
				[ ] 신규취업 [ ] 귀농 [ ] 겸업농	년   개월(농업시작연월:   년   월)

⑥ 농업 외 종사자	성명	생년월일	경영주와의 관계	직종	⑦ 기타 동거인	성명	생년월일	경영주와의 관계

297mm×210mm[백상지 80g/m<sup>2</sup>(재활용품)]

2. 농작물 생산

⑧ 농지 번호	농지소재지	지목		⑨ 경영형태			농지면적(㎡)					재배면적(㎡)			농지 소유주 성명
		공부	실제	자경	공유	임차	공부상	⑩ 실제관리	미이용		⑪시설		품목명	노지	
								휴경	폐경	시설명	면적				

3. 직불금 신청

⑧ 농지 번호	농지소재지	직불금 구분		⑫ 대상농지 여부			⑬ 지급·신청 면적(㎡)					
				⑫-1 전년도 논 재배작물	⑫-2 기준연도 재배작물 (쌀 '98-'00, 밭 '12-'14) ⑫-3 기준연도 농업이용(관리) 여부 (조건불리 '02~'05 중 3년)	⑫-4 기준연도 이전 논(밭)농업 기간	전년도 지급면적		금년도 신청면적			
		쌀	고정 변동				진흥 안	진흥 밖	진흥 안	진흥 밖		
		밭							동계	하계	이모작	소계
		조건불리										
		쌀	고정 변동				진흥 안	진흥 밖	진흥 안	진흥 밖		
		밭							동계	하계	이모작	소계
		조건불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수령횟수('05~'08)						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거나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3조, 제40조의10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받은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향후 직불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4. 가축 사육시설 및 규모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	⑭ 시설현황				용도	⑮ 사육정보	
	시설면적(m <sup>2</sup> )		경영형태			축종	사육규모(마릿수)
	공부	실제	자영	임차			

## 5. 유통 및 가공

(단위 : %, 만원)

	⑯ 주요품목	⑰ 판매금액	⑱ 판매처별 비율					⑲ 가공	품목	연간판매액
			정부공공비축	농협	민간도정가공업체	직거래	기타			
생산 유통	식량									
	채소			도매시장	농협계통출하	수집상	직거래	기타		
	과수			도매시장	농협계통출하	수집상	직거래	기타		
	특용 약용			도매시장	농협계통출하	수집상	직거래	기타		
	축산			도매시장	조합계통출하	민간계통출하	유통업체	기타		
	기타			도매시장	산지경매	유통업체	직거래	기타		

(11쪽중 제4쪽)

6. 추정소득, 자산, 부채

(단위 : 만원)

추정소득 계	(1) 추정농업소득				(2) 추정농업외소득		※ 참고	
	구분	㉔ 농업조수입		㉕ 농업소득		구분		금액
		전체 평균액	경영체추정액	전체 평균액	경영체추정액			
소계					소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2px;">종합소득(국세청)</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2px;">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2px;">복지급여(보건복지부)</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2px;"> </div> <p>* 추정농외소득은 종합소득과 복지급여 합산액 보다 작을 수 없음.</p>	
식량					㉒ 겸업소득			
채소					㉓ 급여소득			
과수					㉔ 자본소득			
특·약용					㉕ 이전소득			
축산					㉖ 비경상소득			
기타								

자산				부채				
계	㉗ 고정자산	㉘ 금융자산	㉙ 재고자산	계	㉚ 농업용	㉛ 가계용	㉜ 겸업용	㉝ 기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에 따라 직접지불금 및 농업경영정보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확인란	
	읍·면·동장	농관원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

경영주를 포함한 신청인 농업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내지 제39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아래의 직접지불금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li> <li>2. 신청인의 농지소재지,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 토지대장·건축물(위반건축물) 대장·농지조서 정보</li> <li>3.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정보</li> <li>4.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li> <li>5. 농업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li> <li>6. 친환경농산물 인증 정보</li> <li>7. 농업인 면세유 배정 및 공급정보</li> <li>8.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번호 등 법인정보</li> <li>9. 토지(건물)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 개별(공통)주택가격, 차량등록원부 등 고정자산정보</li> <li>10. 소득, 자산, 부채, 급여 등의 수급정보</li> </ol>
----------------	---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불사업 등의 농림축산식품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전자정부법」 제36조 내지 제39조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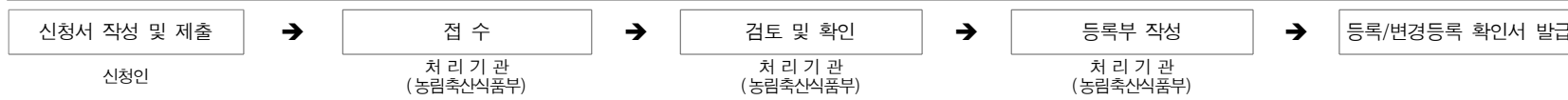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 [ ]

\* 신청인은 위 직접지불금 및 농업경영체 등록신청 정보와 관련하여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신청 등록된 개인정보를 쌀·밭·조건 불리직불제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동의합니다.

\* 본 신청서에 작성한 자료와 농업경영정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보호를 받으며,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작성방법

- ①란의 경영주인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내에서 농·축산물 등의 경작·사육 활동의 의사결정 및 농업소득 귀속 주체가 되는 농업인을 말합니다.
  - \* 성명과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이메일)을 적습니다.
- ②란의 주소는 주민등록지(외국인인 경우에는 신고 거주지)를 적습니다.
- ③란은 영농이력을 적습니다.
- ③-1란 취업동기는 신규 영농취업, 타직종에서 귀농, 겸업농으로 구분하여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 합니다.
- ③-2란은 농업종사기간(농업 시작 시점)을 적습니다.
- ④란은 신청한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좌정보를 적습니다.(예금주는 경영주인 농업인 또는 경영주 외의 농업인으로 한정합니다.)
- ⑤란은 경영주를 제외한 농업인(배우자 포함) 인적사항, 경영주와의 관계, 영농이력을 적습니다.
  - \* 경영주와의 관계: ①배우자, ②미혼자녀, ③기혼자녀, ④손자녀, ⑤부모, ⑥조부모, ⑦ 미혼형제/자매, ⑧기타, ⑨고용인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영농이력 작성요령은 ③과 동일
- ⑥란은 세대원 중 농업외 종사자의 인적사항, 경영주와의 관계, 종사 직종을 적습니다.
- ⑦란은 세대원 중 무직자, 학생 등 비근로자의 인적사항과 경영주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 ⑧란은 신청농지 정보 작성 순서대로 1번부터 적습니다.
- ⑨란은 해당 지번의 경영 형태에 따라 자경, 공유, 임차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자경: 농업경영체가 본인 소유의 농지에서 농작물(임산물 포함)을 재배하는 농업경영 형태
  - 공유: 농업경영체가 본인과 타인의 공동 소유의 농지에서 농작물(임산물 포함)을 재배하는 농업경영 형태
  - 임차: 농업경영체가 타인 소유의 농지를 임차하여 농작물(임산물 포함)을 재배하는 농업경영 형태
  - \* 다만, 경영주, 배우자 등 동일 세대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자경”으로 적습니다.
- ⑩란은 실제 경작면적(= 공부상 면적 - 휴·폐경 면적)을 적습니다.
- ⑪란은 시설명을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일반비닐온실, 육묘장으로 구분하고 그 면적을 적습니다.
- ⑫란은 직불금 대상농지 여부 해당항목을 선택하여 해당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 ⑫-1란은 (밭농업직불금 중 이모작직불금 신청자만 기재) 겨울철 논에 사료·식량 작물을 재배한 경우에만 품목명을 적습니다.
- ⑫-2란은 기준연도(쌀: 1998~2000년/ 밭: 2012~2014년)에 재배한 작물의 품목명을 적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논(밭)농업이 중단된 경우 “기타”로 기록합니다.
  - \* 1998.1.1~2000.12.31 논 재배 작물 : 벼, 미나리, 연근, 왕골
  - \*\* 2012.1.1~2014.12.31 밭 재배 작물 : 보리, 콩 등 밭농업직불제 지급대상 품목
- ⑫-3란은 조건불리직불금 기준연도(2002.1.1.~2005.12.31.)에 해당 농지를 농업에 이용 또는 초지로 관리하였을 경우 “○”로 표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로 표시합니다.
- ⑫-4란은 ⑫-2란에 기타로 기록한 경우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논 재배작물(벼, 미나리, 연근, 왕골)을 재배한 기간을 적습니다.
  - \* ⑫-2,3,4란은 기존에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 신청서 전산등록 시 전년도에 직불금 지급정보가 자동연계 되므로 기재 불요

작성방법

⑬란은 해당농지의 당해연도 직불금 신청 면적을 적습니다.

\* 쌀직불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면적으로 구분하여 적으며, 밭직불의 경우 신청면적을 동계, 하계, 이모작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밭직불 신청면적 중 이모작은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또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논외의 형상과 기능을 갖춘 농지)에서 전년도 10월부터 당해연도 6월까지 해당 농지의 휴경기간에 사료작물,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등을 재배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⑭란은 가축사육시설의 소재지, 시설면적, 경영형태, 사용용도(축사 또는 부대시설)를 적습니다.

⑮란은 사육하고 있는 가축의 축종, 신청일 현재의 사육규모(마릿수)를 적습니다.

⑯란은 전년도에 생산하여 판매한 주요 품목을 적습니다.

⑰란은 ⑯란에서 판매한 품목의 전년도 판매금액을 적습니다.

⑱란은 ⑯란에 기재한 품목별 총 판매금액 중 판매처별 판매금액의 점유비율을 %로 적습니다.

⑲란은 농작물을 주원료로 가공하여 판매한 품목의 명칭과 판매금액을 만원 단위로 적습니다.

⑳란의 평균액은 등록된 농지정보를 바탕으로 자동계산(재배면적 × 재배품목 단위면적당 수량 × 가격)되며(신청인 작성 불요) 이를 참고로 경영체별 농업조수입 추정액(농산물판매금액)을 적습니다.

㉑란의 평균액은 ㉒란 - 경영비(또는 × 소득률)로 자동계산(신청인 작성 불요)되며 이를 참고로 경영체별 농업소득추정액을 적습니다.

㉒란은 농업 외 임업, 어업, 농산물 가공업, 농업서비스, 제조업, 등 기타 산업종사를 통해 얻은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㉓란은 농업 외 임금 및 다른집에 고용되어 지급받은 농업수입 금액을 적습니다.

㉔란은 임대수입(농지, 대지, 시설물, 대농구 등), 이자·배당수입, 유가증권 매매차익 등의 금액을 적습니다.

㉕란은 공적보조금과 사적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공적보조금 : 농업보조금, 농업외 연금, 실업수당, 산재보험금, 기초연금 등

\* 사적보조금 : 출타가족 또는 친인척 등 타가구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보조금

㉖란은 경조수입(축의금, 조의금), 퇴직일시금, 사고보상금, 이주민 주거대책비 일시금, 세금 환급금, 사례금 등 비정기적으로 정부, 공공기관, 타가구로부터 얻은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㉗란은 토지, 건물, 기계·기구 및 비품, 대식물과 대동물등 고정자산의 금액을 적습니다.

㉘란은 현금, 예금, 저축성 보험금, 껌돈, 빌려준 돈, 미수금, 선급금 등 금융자산의 금액을 적습니다.

㉙란은 소동물, 미처분농축산물, 미사용구입자재 등 재고자산의 금액을 적습니다.

㉚란은 생산성 자금 중 영농투자 확대(경지, 건물, 기계, 비료, 농약, 동식물, 사료구입 등)를 위하여 차입한 부채의 금액을 적습니다.

㉛란은 가계운영을 위한 생산성 자금(주거용 건물), 문화용품비, 관혼상제비, 의료비, 기타 생활비, 교육비 등 가계운영을 위하여 차입한 부채의 금액을 적습니다.

㉜란은 생산성 자금 중 겸업활동(토지, 건물, 기계, 기타 겸업활동을 위한 지출)을 위하여 차입한 부채의 금액을 적습니다.

㉝란은 토지, 건물 등을 빌려주고 받은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및 재산증식을 위한 생산성 자금(겸업 및 영농활동과 관계없이 재산증식을 위한 토지, 임야 등의 부동산 구입)을 위한 부채, 타인에게 채무 보증을 선 후 대신 갚게 된 부채 등의 금액을 적습니다.

직불금 신청 구비서류

1.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면·동장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1. 해당 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같은 항 제1호 단서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나. 법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2)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농지인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 시행규칙 제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시행규칙 제2조의2제4호나목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민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3.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 1)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서류

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관내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만 해당한다)

다. 농약·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

라. 종자·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

마. 벼 등의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바. 그 밖에 논농업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 외의 자: 다음 모두의 서류

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관내경작자 외의 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받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나. 가목2)부터 6)까지 중 2개 이상의 서류



직불금 신청 구비서류

4. 신청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1) 법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 2) 법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농지가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등록신청 직전 연도에 무단점유가 아닌 것으로 증명된 농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및 임대권·임차권의 변화가 없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II. 발농업직접지불보조금 신청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면·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1. 해당 농지가 시행규정 제40조의3에 따라 발농업보조금 지급 대상농지가 공부상 밭으로서 당해연도에 발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시행규정 제40조의3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1) 시행규칙 제19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농지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로 지정된 농지
      - 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농지
      -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2. 신청인이 시행규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를 등록신청 할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 III.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보조금 신청인의 경우 경작자증명서류(임차농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등 신청인이 해당 농지의 경작자(초지를 관리하는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농림축산식품부가 경영주를 포함한 농업인(이하 '본인'이라 함)과의 쌀밭조건불리직불제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본인의 등록 신청정보 및 경영정보 내용의 사실여부를 판단하거나, 사업시행기관(지자체 포함) 등 공공기관에서 정책(사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아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대법원, 중앙행정기관(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세청 등과 그 소속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함),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화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보험업법』 제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허가 등을 받은 보험회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함),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민원처리기관'이라 함),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게 수집·이용·제공·조회 하는데 동의합니다.

본인은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경영주           성명 :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b>수집·이용목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고, 쌀 등 직접지불제 시행으로 농업경영체의 소득안정과 맞춤형 농정 지원</li> <li>- 맞춤형 농정지원/농업인 서비스 지원(문자메시지 발송 등)/지방농정 지원/농업·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li> </ul>
<b>수집·이용할 항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식별정보 : 농업인·농업외종사자기타 동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직종, 주소·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li> <li>농지정보(취득, 처분, 말소, 전용 등) : 농지별 지목, 소유자, 면적, 정보보조·융자금 수급, 친환경인증정보 등</li> <li>농업외소득·자산·부채정보 : 종합소득정보, 각종 연금 수혜정보, 부채정보 등</li> <li>기타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채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농지실경작 여부, 정책자금 수령정보, 가족사육 정보, 농(축)산물 유통·가공정보, 농기계 보유정보, 교육이수 정보, 면세유 배정정보 등</li> </ul> </li> <li>※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li> </ul>
<b>보유·이용 기간</b>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농업경영체 등록말소 또는 해지(해제)일까지 위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등록말소 후에도 직불금 수혜정보 관리등을 위하여 위의 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b>수집·이용 동의 여부</b>	귀 농림축산식품부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b>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b>	귀 농림축산식품부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b>문자메시지 등 수신여부</b>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및 쌀 등 직접지불제 신청안내를 비롯한 전반적인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수신받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b>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b>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직불금 수령 및 맞춤형 농정지원 등에 불이익을 받거나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2.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b>제공·조회 대상기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법원,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산하기관, 지자체, 지방공기업, 농협 등 금융기관, 공공기관, 민원처리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li> <li>업무위탁기관(자)에 대한 제공 : 귀 농림축산식품부는 수탁기관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li> </ul>
<b>제공·조회 목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경영체(경영주를 포함한 농업인) 쌀직불제 등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심사 및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농림사업 시행 공공기관에서 정책 자료로 활용</li> <li>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직불금의 부장중복 지원의 방지 등</li> <li>맞춤형 농정지원 등을 위한 등록정보의 사실여부 확인,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법령상 의무이행 등</li> </ul>
<b>제공·조회 및 요청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식별정보 : 농업인·농업외종사자기타 동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직종, 주소·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li> <li>농지정보(취득, 처분, 말소, 전용 등) : 농지별 지목, 소유자, 면적, 정보보조융자금 수급, 친환경인증정보 등</li> <li>농업외소득·자산·부채정보 : 종합소득정보, 각종 연금 수혜정보, 부채정보 등</li> <li>기타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채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농지실경작 여부, 정책자금 수령정보, 가족사육정보, 농(축)산물 유통·가공정보, 농기계 보유정보, 교육이수 정보, 면세유 배정정보 등</li> </ul> </li> <li>※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li> </ul>
<b>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 정보 보유·이용 기간</b>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동의일로부터 농업경영체 등록말소 또는 해지(해제)일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목적과 관련된 맞춤형 농정지원,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직불금 중복 지원 방지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b>제공·조회동의 여부</b>	귀 농림축산식품부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b>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b>	귀 농림축산식품부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b>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b>	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직불금 수령 및 맞춤형 농정지원 등에 불이익을 받거나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농업경영체 [ ] 등록 신청서 (농업법인용)  
 [ ] 변경

※ 제6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11쪽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유형	농가(법인)고유번호	경영주 번호

1. 일반현황

형태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합명, [ ]합자, [ ]주식, [ ]유한 )							
① 법인현황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년도	전화번호						
	팩스	전자우편						
	법인소재지							
	주요사업 [ ]생산, [ ]가공, [ ]유통, [ ]수출, [ ]농업서비스, [ ]기타, 마을법인[ ]							
② 대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직불금 등 수령계좌	은행	계좌번호					
③ 대표자 외 조합원(4인 이상) 또는 등기이사(5인 이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직책					
④ 출자규모	영농조합	농업회사	출자자 수			출자금 총액		
	조합원(대표자 포함)	농업인	개인	법인	계	개인	법인	계
	준조합원	비농업인						
	계							
⑤ 상용근로자 수	내국인		외국인					

2. 농작물 생산

⑥ 농지 번호	농지소재지	지목		⑦ 경영형태			농지면적(m <sup>2</sup> )					재배면적(m <sup>2</sup> )			농지 소유주 성명	
		공부	실제	자경	공유	임차	공부상	⑧ 실제관리	미이용		⑨ 시설		품목명	노지		시설
									휴경	폐경	시설명	면적				

3. 직불금 신청

⑥ 농지 번호	농지 소재지	직불금 구분		⑩ 대상농지 여부			⑪ 지급신청 면적(m <sup>2</sup> )									
				⑩-1 전년도 논 재배작물	⑩-2 기준연도 재배작물 (쌀 '98~'00, 밭 '12~'14)	⑩-4 기준연도 이전 논(밭)농업 기간	전년도 지급면적		금년도 신청면적							
					⑩-3 기준연도 농업이용(관리) 여부 (조건불리 '02~'05 중 3년)		진흥 안	진흥 밖	진흥 안	진흥 밖						
		쌀	고정	/												
			변동													
		밭									동계	하계	이모작	소계		
		조건불리		/		/										
		쌀	고정	/												
			변동													
		밭									동계	하계	이모작	소계		
		조건불리		/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수령횟수('05~'08)							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거나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 제도 시행규정』 제33조, 제40조의10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받은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향후 직불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6. 추정소득, 자산, 부채

(단위 : 만원)

추정소득 계	(1) 추정농업소득				(2) 추정농업외소득				
	구분	⑱ 농업조수입		⑲ 농업소득		구분	금액	※ 참고	
		전체 평균액	경영체추정액	전체 평균액	경영체추정액				
소계					소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종합소득(국세청)</div>		
식량					⑳ 겸업소득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복지급여(보건복지부)</div>		
채소					㉑ 급여소득		* 추정농외소득은 종합소득과 복지급여 합산액 보다 작을 수 없음.		
과수					㉒ 자본소득				
특·약용					㉓ 이전소득				
축산					㉔ 비경상소득				
기타									

자산				부채				
계	㉕ 고정자산	㉖ 금융자산	㉗ 재고자산	계	㉘ 농업용	㉙ 가계용	㉚ 겸업용	㉛ 기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에 따라 직접지불금 및 농업경영정보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확인란	
읍·면·동장	농관원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

경영주를 포함한 신청인 농업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내지 제39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아래의 직접 지불금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li> <li>2. 신청인의 농지소재지,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 토지대장·건축물(위반건축물) 대장·농지조서 정보</li> <li>3.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정보</li> <li>4.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li> <li>5. 농업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li> <li>6. 친환경농산물 인증 정보</li> <li>7. 농업인 면세유 배정 및 공급정보</li> <li>8.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번호 등 법인정보</li> <li>9. 토지(건물)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 개별(공통)주택가격, 차량등록원부 등 고정자산정보</li> <li>10. 소득, 자산, 부채, 급여 등의 수급정보</li> </ol>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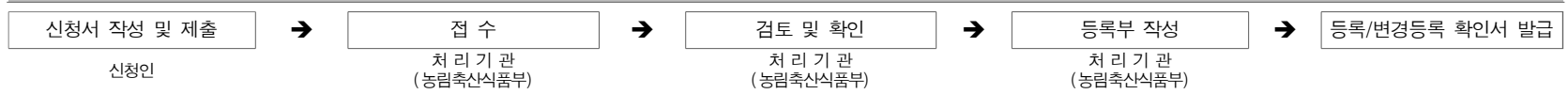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불사업 등의 농림축산식품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전자정부법」 제36조 내지 제39조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 [ ]

- \* 신청인은 위 직접지불금 및 농업경영체 등록신청 정보와 관련하여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신청 등록된 개인정보를 쌀·밭·조건불리직불제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동의합니다.
- \* 본 신청서에 작성한 자료와 농업경영정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보호를 받으며,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자)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작성방법

- ①란은 법인등기부상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설립연도, 연락처, 법인 주사무소 소재지,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 및 전자우편은 법인사무소에서 이용하는 것을 적되, 법인이 소유·이용하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대표가 사용하는 것을 적습니다.
  - \*\* 주요사업은 정관으로 정한 법인의 주요사업에 해당하는 [ ]칸에 ○표시를 하되, 중복선택 가능합니다.
  - \*\*\* 체험마을 등 마을단위로 농업법인을 만든 경우에는 마을법인에 (○) 표시 합니다.
  - \*\*\*\*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좌정보를 기재합니다.
- ②란은 대표자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민등록지 주소를 적습니다.
- ③란은 대표자 외 조합원(4인이상) 또는 등기이사(5인이하)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직책을 적습니다.
- ④란의 출자자수와 출자금 총액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과 준조합원,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인과 비농업인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각각 개인과 법인으로 재 구분하여 적습니다.
- ⑤란은 출자자가 아닌 일반인으로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의 수를 적습니다.
- ⑥란은 신청농지 정보 작성 순서대로 1번부터 적습니다.
- ⑦란은 해당 지번의 경영 형태에 따라 자경, 공유, 임차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자경: 농업경영체가 본인 소유의 농지에서 농작물(임산물 포함)을 재배하는 농업경영 형태
  - 공유: 농업경영체가 본인과 타인의 공동 소유의 농지에서 농작물(임산물 포함)을 재배하는 농업경영 형태
  - 임차: 농업경영체가 타인 소유의 농지를 임차하여 농작물(임산물 포함)을 재배하는 농업경영 형태
- ⑧란은 실제 경작면적(= 공부상 면적 - 휴폐경 면적)을 적습니다.
- ⑨란은 시설명을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일반비닐온실, 육묘장으로 구분하고 그 면적을 적습니다.
- ⑩란은 직불금 대상농지 여부 해당항목을 선택하여 해당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 ⑩-1란은 (밭농업직불금 중 이모작직불금 신청자만 기재) 겨울철 논에 사료·식량 작물을 재배한 경우에만 품목명을 적습니다.
  - ⑩-2란은 기준연도(쌀: '98~'00년/ 밭: '12~'14년)에 재배한 작물의 품목명을 적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논(밭)농업이 중단된 경우 “기타”로 적습니다.
    - \* 1998.1.1~2000.12.31 논 재배 작물 : 벼, 미나리, 연근, 왕골
    - \*\* 2012.1.1~2014.12.31 밭 재배 작물 : 보리, 콩 등 밭농업직불제 지급대상 품목
  - ⑩-3란은 조건불리직불금 기준연도(2002.1.1.~2005.12.31.)에 해당 농지를 농업에 이용 또는 초치로 관리하였을 경우 “○”로 표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로 표시합니다.
  - ⑩-4란은 ⑩-2란에 기타로 기록한 경우 기준연도 이전에 논 재배작물(벼, 미나리, 연근, 왕골)을 재배한 기간을 적습니다.
    - \* ⑩-2,3,4란은 기존에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 신청서 전산등록 시 전년도에 직불금 지급정보가 자동연계 되므로 기재 불요

작성방법

⑪란은 해당농지의 당해연도 직불금 신청 면적을 적습니다

\* 쌀직불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면적으로 구분하여 적으며, 밭직불의 경우 신청면적을 동계, 하계, 이모작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밭직불 신청면적 중 이모작은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또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논 의 형상과 기능을 갖춘 농지)에서 전년도 10월부터 당해연도 6월까지 해당 농지의 휴경기간에 사료작물,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등을 재배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⑫란은 가축사육시설의 소재지, 시설면적, 경영형태, 사용용도를 적습니다.

⑬란은 사육하고 있는 가축의 축종, 사육규모(마릿수), 전년도 출하량을 적습니다.

⑭란은 전년도에 생산하여 판매한 주요 품목을 적습니다.

⑮란은 ⑭란에서 판매한 품목의 전년도 판매금액을 적습니다.

⑯은 ⑮란에 기재한 품목별 총 판매금액 중 판매처별 판매금액의 점유비율을 적습니다.

⑰란은 경영체가 직접 생산한 농작물을 주원료로 만든 가공품의 명칭과 판매금액을 적습니다.

⑱란의 평균액은 등록된 농지정보를 바탕으로 자동계산(재배면적 × 재배품목 단위면적당 수량 × 가격)되며(신청인 작성 불요) 이를 참고로 경영체별 농업조수입 추정액(농산물판매금액)을 적습니다.

⑲란의 평균액은 ⑱란 - 경영비(또는 × 소득율)로 자동계산(신청인 작성 불요)되며 이를 참고로 경영체별 농업소득추정액을 적습니다.

⑳란은 농업 외 임업, 어업, 농산물 가공업, 농업서비스, 제조업, 등 기타 산업종사를 통해 얻은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㉑란은 농업 외 임금 및 다른집에 고용되어 지급받은 농업수입 금액을 적습니다.

㉒란은 임대수입(농지, 대지, 시설물, 대농구 등), 이자-배당수입, 유가증권 매매차익 등의 금액을 적습니다.

㉓란은 공적보조금과 사적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공적보조금 : 농업보조금, 농업외 연금, 실업수당, 산재보험금, 기초연금 등

\* 사적보조금 : 출타가족 또는 친인척 등 타가구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보조금

㉔경조수입(축의금, 조의금), 퇴직일시금, 사고보상금, 이주민 주거대책비 일시금, 세금 환급금, 사례금 등 비정기적으로 정부, 공공기관, 타가구로부터 얻은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㉕란은 토지, 건물, 기계·기구 및 비품, 대식물과 대동물등 고정자산의 금액을 적습니다.

㉖란은 현금, 예금, 저축성 보험금, 껌돈, 빌려준 돈, 미수금, 선급금 등 금융자산의 금액을 적습니다.

㉗란은 소동물, 미처분농축산물, 미사용구입자재 등 재고자산의 금액을 적습니다.

㉘란은 생산성 자금 중 영농투자 확대(경지, 건물, 기계, 비료, 농약, 동식물, 사료구입 등)를 위하여 차입한 부채의 금액을 적습니다.

㉙란은 가계운영을 위한 생산성 자금(주거용 건물), 문화용품비, 관혼상제비, 의료비, 기타 생활비, 교육비 등 가계운영을 위하여 차입한 부채의 금액을 적습니다.

㉚란은 생산성 자금 중 겸업활동(토지, 건물, 기계, 기타 겸업활동을 위한 지출)을 위하여 차입한 부채의 금액을 적습니다.

㉛란은 토지, 건물 등을 빌려주고 받은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및 재산증식을 위한 생산성 자금(겸업 및 영농활동과 관계없이 재산증식을 위한 토지, 임야 등의 부동산 구입)을 위한 부채, 타인에게 채무 보증을 선 후 대신 갚게 된 부채 등의 금액을 적습니다.

직불금 신청 구비서류

1.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면·동장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1. 해당 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같은 항 제1호 단서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나. 법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 2)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농지인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1) 시행규칙 제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시행규칙 제2조의2제4호나목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2)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3.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 1)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 1)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서류
    - 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관내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나.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만 해당한다)
    - 다. 농약·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
    - 라. 종자·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
    - 마. 벼 등의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 바. 그 밖에 논농업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서류
  - 2)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 외의 자: 다음 모두의 서류
    - 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관내경작자 외의 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받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 나. 가목2)부터 6)까지 중 2개 이상의 서류

직불금 신청 구비서류

4. 신청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1) 법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 2) 법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농지가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등록신청 직전 연도에 무단점유가 아닌 것으로 증명된 농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및 임대권·임차권의 변화가 없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II. 발농업직접지불보조금 신청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면·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1. 해당 농지가 시행규정 제40조의3에 따라 발농업보조금 지급 대상농지가 공부상 밭으로서 당해연도에 발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시행규정 제40조의3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1) 시행규칙 제19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농지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로 지정된 농지
      - 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농지
      -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2. 신청인이 시행규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를 등록신청 할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 III.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보조금 신청인의 경우 경작자증명서류(임차농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등 신청인이 해당 농지의 경작자(초지를 관리하는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농림축산식품부가 경영주를 포함한 농업인(이하 '본인'이라 함)과의 쌀·밭·조건불리직불제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본인의 등록 신청정보 및 경영정보 내용의 사실여부를 판단하거나, 사업시행기관(지자체 포함) 등 공공기관에서 정책(사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아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대법원, 중앙행정기관(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세청 등과 그 소속·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함),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보험업법』 제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허가 등을 받은 보험회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함),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민원처리기관'이라 함),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게 수집·이용·제공·조회 하는데 동의합니다.

본인은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등기이사)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등기이사)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등기이사)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등기이사)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등기이사)	성명 :	서명 또는 (인)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고, 쌀 등 직접지불제 시행으로 농업경영체의 소득안정과 맞춤형 농정 지원</li> <li>- 맞춤형 농정지원/농업인 서비스 지원(문자메시지 발송 등)/지방농정 지원/농업·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li> </ul>
수집·이용할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 : 농업인·농업외종사자·가타 동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직종,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li> <li>■ 농지정보(취득, 처분, 말소, 전용 등) : 농지별 지목, 소유자, 면적, 정보보조용자금 수급, 친환경인증정보 등</li> <li>■ 농업외소득·자산·부채정보 : 종합소득정보, 각종 연금 수혜정보, 부채정보 등</li> <li>■ 기타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채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농지실경작 여부, 정책자금 수령 정보, 가축사육정보, 농(축)산물 유통·가공정보, 농기계 보유정보, 교육이수 정보, 면세유 배정정보 등</li> </ul> </li> <li>※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li> </ul>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농업경영체 등록말소 또는 해지(해제)일까지 위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등록말소 후에도 직불금 수혜정보 관리등을 위하여 위의 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 농림축산식품부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귀 농림축산식품부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문자메시지 등 수신여부	농업경영체(변경)등록 및 쌀 등 직접지불제 신청안내를 비롯한 전반적인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수신받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직불금 수령 및 맞춤형 농정지원 등에 불이익을 받거나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2. 제공·조치에 관한 사항

제공·조치 대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법원,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자체, 지방공기업, 농협 등 금융기관, 공공기관, 민원처리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li> <li>■ 업무위탁기관(자)에 대한 제공 : 귀 농림축산식품부는 수탁기관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li> </ul>
제공·조치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경영체(경영주를 포함한 농업인) 쌀직불제 등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심사 및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농림사업 시행 공공기관에서 정책 자료로 활용</li> <li>■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직불금의 부정중복 지원의 방지 등</li> <li>■ 맞춤형 농정지원 등을 위한 등록정보의 사실여부 확인,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법령상 의무이행 등</li> </ul>
제공·조치 및 요청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 : 농업인·농업외종사자·가타 동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직종,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li> <li>■ 농지정보(취득, 처분, 말소, 전용 등) : 농지별 지목, 소유자, 면적, 정보보조용자금 수급, 친환경인증정보 등</li> <li>■ 농업외소득·자산·부채정보 : 종합소득정보, 각종 연금 수혜정보, 부채정보 등</li> <li>■ 기타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채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농지실경작 여부, 정책자금 수령정보, 가축사육정보, 농(축)산물 유통·가공 정보, 농기계 보유정보, 교육이수 정보, 면세유 배정정보 등</li> </ul> </li> <li>※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li> </ul>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동의일로부터 농업경영체 등록말소 또는 해지(해제)일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목적과 관련된 맞춤형 농정지원,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직불금 중복 지원 방지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제공·조치동의 여부	귀 농림축산식품부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귀 농림축산식품부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제공·조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치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직불금 수령 및 맞춤형 농정지원 등에 불이익을 받거나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 및 고시

### <관련 법률>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115
2. 농지법 .....	116
3. 하천법 .....	119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1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122
6. 택지개발촉진법 .....	126
7. 농어촌정비법 .....	127
8. 자연재해대책법 .....	130
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134
10. 소비자기본법 .....	134
11. 양곡관리법 .....	135
12. 국가재정법 .....	136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146
1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147
1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148
1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	150
17. 소득세법 .....	150
18. 전자정부법 .....	151
1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151
2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152
21. 개인정보 보호법 .....	152

### <관련 고시>

22.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목표가격 .....	153
23. 2013년산 쌀 80kg당 변동직접지불금 지급금액 .....	154
24. 농어촌지역 고시 .....	155
25.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	156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

###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 가. 농업: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농업인: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나. 어업인: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어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읍·면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수산물: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어업·농어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 마. 생태계, 수산자원 및 해안의 보전
  - 바. 농어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10. "수산자원"이란 수중(水中)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국민경제 및 국민 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11. "어장"이란 수생생물이 사는 내수면, 해수면, 갯벌로서 어업에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제28조(농어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농어업경영을 수행하는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 및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 및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1, 2009.4.1, 2009.5.2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 가. 삭제 <2009.5.27>

나. 삭제 <2009.5.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①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농지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으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③한국농어촌공사는 제2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으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산정한 개별 토지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④한국농어촌공사가 제3항에 따라 농지를 매수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서 용자한다. <개정 2008.12.29>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①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5.27, 2013.3.23>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②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7, 2011.4.14, 2013.3.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 해당 구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제35조(농지전용신고)** ①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5.27, 2012.1.17>

1.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2.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3.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 ②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와 규모,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 제한, 설치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제6조제2항제9호의2에 해당하는 농지를 전용하려면 제34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7]

## ▣ 하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1, 2012.1.17, 2013.3.23>

1. "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2. "하천구역"이라 함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
3. "하천시설"이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시설에 관하여는 하천관리청이 해당 시설을 하천시설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시설을 설치한 자의 동의를 얻은 것에 한한다.
  - 가. 제방·호안(護岸)·수제(水制) 등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 나. 댐·하구둑(「방조제관리법」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포함한다)·홍수조절지·저류지·지하하천·방수로·배수펌프장(「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배수장과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를 배제(排除)하기 위하여 설치한 펌프장을 제외한다)·수문(水門) 등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 다. 운하·안벽(岸壁)·물양장(物揚場)·선착장·갑문 등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시설
  -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하천관리청"이라 함은 하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하천의 지정·사용 및 보전 등을 하는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5. "하천공사"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하천의 신설·증설·개량 및 보수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
6. "유지·보수"라 함은 하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점검·정비 등의 활동을 말한다.

7. "수문(水文)조사시설"이라 함은 물의 순환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시설 및 홍수발생의 예보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8. "하천수"라 함은 하천의 지표면에 흐르거나 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 또는 하천에 저장되어 있는 물을 말한다.

**제10조(하천구역의 결정 등)** ①하천관리청은 제7조제6항에 따라 하천의 명칭 및 구간을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해제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하천구역으로 결정 또는 변경하거나 하천구역을 폐지하여야 한다.

1.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하 "하천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완성제방(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단면을 가지고 있어서 구조적 안정성이 이미 확보된 제방을 말한다)이 있는 곳은 그 완성제방의 부지 및 그 완성제방으로부터 하심측(河心側)의 토지
  2. 하천기본계획에 계획제방(제방을 보강하거나 새로이 축조하도록 계획된 제방을 말한다)이 있는 곳은 그 계획제방의 부지 및 그 계획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3. 하천기본계획에 제방의 설치계획이 없는 구간에서는 계획하폭(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양안 사이의 폭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토지
  4. 댐·하구둑·홍수조절지·저류지의 계획홍수위(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 경우 그 수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
  5. 철도·도로 등 선형 공작물이 제방의 역할을 하는 곳에 있어서는 선형 공작물의 하천측 비탈머리를 제방의 비탈머리로 보아 그로부터 하심측에 해당하는 토지
  6.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하천에 있어서는 하천에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그 토지 주변에서 풀과 나무가 자라는 지형의 상황, 홍수흔적, 그 밖의 상황을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균하여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를 것으로 판단되는 수면 아래에 있는 토지
- ②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하천구역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또는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이하 "하천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천구역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③제7조제6항은 제1항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폐지에 관하여 준용

한다.

④ 하천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를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⑤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또는 폐지는 제3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된 때에는 국가하천인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으로, 지방하천인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 가. 주거지역: 거주와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전문개정 2009.2.6]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①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의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⑤ 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지정한 후에 제3호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제8호의 사항을 정하여 이를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4. 사업 시행방법
  5. 주요 유치 업종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7. 재원(財源) 조달계획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⑥ 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내용 중 산업시설용지의 면적은 산업단지의 종류에 따라 산업단지 유상공급면적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70 이하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①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의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⑤ 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지정 한 후에 제3호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제8호의 사항을 정하여 이를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14>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4. 사업 시행방법
5.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유치업종을 열거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경우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은 생략한다)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7. 재원(財源) 조달계획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내용 중 산업시설용지의 면적(산업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제2조제7호의3의 복합용지를 포함한다)은 산업단지의 종류에 따라 산업단지 유상공급면적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 2014.7.15] 제6조

**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 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8.4, 2013.3.23, 2014.1.14>

③ 삭제 <2008.12.26>

④ 삭제 <2008.12.26>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시·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3.3.23>

⑥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8.4>

⑦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과정에서 관계 기관 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정을 요청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3.3.23>

[전문개정 2007.4.6]

**제7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①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이 지정하며,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② 인구의 과밀 방지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없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권자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4>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하고, 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하여는 제7조제7항을 준용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시·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8.4]

**제8조(농공단지의 지정)** ① 농공단지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1.8.4>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농공단지를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도면을 첨부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4, 2014.1.14>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농공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④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1.14>

⑤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4>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지정된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농공단지와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3.3.23, 2014.1.14>  
[제목개정 2011.8.4]

##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택종합계획 중 주택·택지의 수요·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택지수급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지정한 택지개발지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택지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지정권자를 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택지수급계획에서 정한 해당 시·도의 계획량을 초과하여 지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지정하려는 택지개발지구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국가가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제7조제1항제2호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수급계획상 택지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4. 제1항 후단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지정권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고 해당 시장(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포함한다)·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의견(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들은 후 「주택법」 제85조에 따른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

택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지정권자가 시·도지사인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⑤ 지정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가 제6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9조에 따라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⑥ 지정권자가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를 지정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택지개발지구의 명칭, 위치, 지정된 면적 및 제8조에서 규정한 택지개발계획을 관보에 고시하고, 시장(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송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그 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제1항·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을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전문개정 2011.5.30]

##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14, 2012.2.17>

1. "농어촌"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한다.
2.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광역시 자치구"라 한다)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3. "농어촌용수"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수산용수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용수를 말한다.
4. "농어촌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 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 다. 농어촌산업 육성사업
  - 라.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
  - 마.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5.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 나. 경지 정리, 배수(排水)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와 준설(浚渫)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 다.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간척, 매립, 개간 등을 하는 농지확대 개발사업
    - 라. 농업 주산단지(主産團地) 조성과 영농시설 확충사업
    - 마. 저수지[농어촌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하천,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 등에 물을 가두어 두거나 관리하기 위한 시설과 홍수위(홍수위: 하천의 최고 수위) 이하의 수면 및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담수호 등 호수와 늪의 수질오염 방지사업과 수질개선 사업
    - 바. 농지의 토양개선사업
    - 사. 그 밖에 농지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6.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揚水場), 관정(관정: 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淤), 용수로, 배수로, 유지(유지: 웅덩이),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도(農道) 등 농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방조제, 제방(제방: 둑)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7.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결함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정밀안전진단"이란 안전점검을 한 결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시설의 구조적 안정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 및 평가하여 보수, 보강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9. "안전관리"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을 위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유지·개수·보수, 사용 제한, 철거 등 모든 행위를 말한다.
10. "생활환경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며 농어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

사업

- 나. 기존 마을의 토지와 주택 등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농어촌마을 재개발사업
  - 다. 분산된 마을의 정비사업
  - 라. 간이 상수도, 마을하수도(「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중 농어촌지역에 마을 단위로 설치하는 공공하수도를 말한다) 및 오수·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등 농어촌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
  - 마. 주민생활의 거점이 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정주생활권(定住生活圈) 개발사업
  - 바. 빈집의 정비
  - 사.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사업
  - 아. 치산녹화(治山綠化) 등 국토보전시설의 정비·확충
  - 자. 농어촌 주택의 개량(신축·증축·개축 및 대수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사업
  - 차. 슬레이트(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용된 농어촌 주택·공동이용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 및 처리 사업
  - 카. 그 밖에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11. "농어촌 주택"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위치하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및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2. "빈집"이란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13. "마을정비구역"이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서 농어촌정비사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0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14. "환지(換地)"란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새로 정비된 토지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15. "농어촌산업"이란 농어촌의 특산물·전통문화·경관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 학습관,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 나. 관광농원사업: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 다. 주말농원사업: 주말영농과 체험영농을 하려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 라.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
17. "한계농지"란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서 영농 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8.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와 그 주변산지 등 토지(이하 "한계농지등"이라 한다)를 활용하여 농림수산업적 이용,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이용, 다목적 이용 등의 형태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1.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 "자연재해"란 제1호에 따른 재해 중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3. "풍수해"(風水害)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4. "사전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5.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란 지역별로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低減)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가 지역안전도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6. "우수유출저감시설"이란 우수(雨水)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을 말한다.
7. "수방기준"(水防基準)이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耐久性)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8. "침수흔적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기록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9. "재해복구보조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0. "구호금품"이란 자연재해를 입은 자에게 이 법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11.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이란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한 기준을 말한다.
12. "재해지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흔적, 침수 예상 및 재해정보 등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13.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방재안전대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료 조사 및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14. "지역안전도 진단"이란 자연재해 위험에 대하여 지역별로 안전도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15. "방재기술"이란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기후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통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예측·규명·저감·정보화 및 방재 관련 제품생산·제도·정책 등에 관한 모든 기술을 말한다.
16. "방재산업"이란 방재시설의 설계·시공·제작·관리, 방재제품의 생산·유통,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그 밖에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3.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2013.8.6>

1.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 "자연재해"란 제1호에 따른 재해 중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3. "풍수해"(風水害)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4. "사전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5.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란 지역별로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低減)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가 지역안전도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6. "우수유출저감시설"이란 우수(雨水)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을 말한다.
7. "수방기준"(水防基準)이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耐久性)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8. "침수흔적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기록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9. "재해복구보조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0. 삭제 <2013.8.6>
11.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이란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한 기준을 말한다.
12. "재해지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흔적, 침수 예상 및 재해정보 등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13. "방재관리대책대행자"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제38조제2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14. "지역안전도 진단"이란 자연재해 위험에 대하여 지역별로 안전도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15. "방재기술"이란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기후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통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자연재

해에 대한 예측·규명·저감·정보화 및 방재 관련 제품생산·제도·정책 등에 관한 모든 기술을 말한다.

16. "방재산업"이란 방재시설의 설계·시공·제작·관리, 방재제품의 생산·유통,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그 밖에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3.7]

[시행일 : 2014.8.7] 제2조

**제3조(책무)** ①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1.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 가. 자연재해 원인 조사 및 분석
  - 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관리
2. 풍수해 예방 및 대비
  - 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 나. 수방기준 제정·운영
  - 다.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기준 제정·운영
  - 라. 내풍(耐風)설계기준 제정·운영
  - 마. 그 밖에 풍수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3. 설해(雪害)대책
  - 가. 설해 예방대책
  - 나. 각종 제설자재 및 물자 비축
  - 다. 그 밖에 설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4. 낙뢰대책
  - 가. 낙뢰피해 예방대책
  - 나. 각 유관기관 지원·협조 체제 구축
  - 다. 그 밖에 낙뢰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5. 가뭄대책
  - 가.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 나. 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 관리·유지
  - 다. 빗물모으기시설을 활용한 가뭄 극복대책
  - 라. 그 밖에 가뭄대책에 필요한 사항
6. 재해정보 및 긴급지원
- 가. 재해 예방 정보체계 구축
  - 나. 재해정보 관리·전달 체계 구축
  - 다. 재해 대비 긴급지원체계 구축
  - 라. 비상대처계획 수립
7. 그 밖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 점검 방법, 점검 결과의 기록·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연재해의 유형별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처요령을 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업무지침, 주민 교육·홍보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 ⑥ 국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자연재난의 예방·복구 및 대책에 관한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7]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16조(행정시의 폐치·분합, 명칭 및 구역 등)** ①행정시의 폐치·분합, 명칭 및 구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행정시의 사무소 소재지는 도조례로 정하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 소비자기본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4. "사업자단체"라 함은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 ▣ 양곡관리법

**제13조의2(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추천을 받아 양곡을 수입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양곡관리특별회계,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또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낼 의무가 있는 자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낼 의무가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상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 수입이익금 징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4.1]

**제13조의2(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추천을 받아 양곡을 수입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양곡관리특별회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또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낼 의무가 있는 자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낼 의무가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 수입이익금 징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4.1]

[시행일 : 2015.1.1] 제13조의2

## ▣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① 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 및 기금을 제외한다. <개정 2008.3.28>

1. 우체국보험특별회계
  2. 국민연금기금
  3. 공무원연금기금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5. 군인연금기금
  6. 고용보험기금
  7.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8. 임금채권보장기금
  9.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0. 그 밖에 차입금이나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와 기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회계와 기금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입·전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와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예산안 또는 기금 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62조(기금관리·운용의 원칙)** ① 기금관리주체는 그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게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8.12.31>

**제63조(기금자산운용의 원칙)** ① 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관리주체는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관리주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8.12.31>

**제64조(의결권 행사의 원칙)**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기금의 이익을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하고, 그 행사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6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68조의2,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기금신설로 인하여 연도 중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할 때에는 제66조제5항, 제68조제1항 전단의 규정 중 제출시기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2010.5.17>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①기금관리주체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 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자문회의의 자문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4.1.1>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연계하기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기금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한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기금관리주체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1>

⑥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금관리주체와 협의·조정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⑦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조정함에 있어 과도한 여유재원이 운용되고 있는 기금(구조적인 요인을 지닌 연금성 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상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당해 기금수입의 원천이 되는 부담금 등의 감소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금관리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⑧제1항·제5항 및 제6항에 규정된 기금관리주체 중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각각 동항에 규정된 제출·협의 등에 있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제67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①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②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사업목표, 자금의 조달과 운용(주식 및 부동산 취득한도를 포함한다)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③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



분하고 지출계획은 성질별 또는 사업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의 단위는 장·관·항으로, 세부항목의 단위는 세항·목으로 각각 구분한다.

④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 등)** ①정부는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항목 단위로 마련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된 국채발행 및 차입금의 한도액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총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②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6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5.17]

**제69조(증액 동의)**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기금관리주체는 지출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기금관리주체(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는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조정하여 마련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1.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 이하
  2.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3 이하. 다만,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비에 해당하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10분의 2 이하로 한다.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적 지출금액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
    - 가. 기금운용계획상 여유자금 운용으로 계상된 지출금액
    - 나. 수입이 기금운용계획상의 수입계획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초과수입과 직접 관련되는 지출금액
    - 다. 환율 및 금리의 변동,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 지출금액
  5. 기존 국채를 새로운 국채로 대체하기 위한 국채 원리금 상환
  6.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한 국채 원리금 상환
- ④ 기금관리주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제61조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 ⑤ 기금관리주체는 제3항제4호다목,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지출금액을 변경한 때(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를 초과한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변경명세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명세서에는 국채 발행 및 상환 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 ⑥ 각 기금관리주체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변경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3.18>
-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우 경유기관에 관하여는 제66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31, 2009.3.18>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68조제1항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기금운용계획안등"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첨부서류가 이미 제출된 서류와 중복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1. 기금조성계획
  2. 추정재정상태표 및 추정재정운영표
  3. 수입지출계획의 총계표·순계표 및 주요항목별 내역서
  4.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계획서
  5. 기금과 회계 간 또는 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명세서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안등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6.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 [제목개정 2008.12.31]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68조제1항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기금운용계획안등"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첨부서류가 이미 제출된 서류와 중복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4.1.1>

1. 기금조성계획
2. 추정재정상태표 및 추정재정운영표
3. 수입지출계획의 총계표·순계표 및 주요항목별 내역서
4.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계획서
5. 기금과 회계 간 또는 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명세서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안등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6.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7. 제38조제2항(제85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

[제목개정 2008.12.31]

[시행일 : 2014.4.2] 제71조제7호

**제72조(지출사업의 이월)** ①기금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

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기금관리주체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출금액을 이월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유기관에 관하여는 제66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제73조(기금결산)**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소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중앙관서결산보고서에 통합하여 작성한 후 제58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73조의2(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5.17]

**제73조의3(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 ① 연금급여 및 보험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 또는 채권을 발행하는 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의 관리주체는 소관 기금에 관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이하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②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 수지 등의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2. 부채의 증감에 대한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3. 전년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분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④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5.17]

**제74조(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금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12.31>

1.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2. 제7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제73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5.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과 기금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심의회 위원장은 기금관리주체의 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2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은 이를 심의회로 보며, 그 위원회 등이 다른 법률에 따라 심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제2항 각 호의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75조** 삭제 <2008.12.31>

**제76조(자산운용위원회)** ①전전 회계연도말에 보유한 여유자금의 규모가 1조원을 초과하는 기금(「외국환거래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운용법 제외한다)의 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자산운용위원회(이하 "자산운용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77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2. 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자산운용 전략에 관한 사항
4. 자산운용 평가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③자산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관리주체의 장이 기금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해 기금관리주체 및 수탁기관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 중에서 선임한다.

④자산운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기금관리주체의 장이 선임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정수는 전체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당해 기금관리주체 및 수탁기관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
2. 자산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⑤그 밖에 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어야 한다.

②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운용평가 및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거나 그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78조(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특례)** ①제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연금기금은 자산운용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여유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의 조직·운영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연금법」에서 따로 정한다.

**제79조(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①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자산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지침(이하 "자산운용지침"이라 한다)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이를 14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운용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기금은 심의회의 심의 전에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7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심의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기금의 경우에는 기금관리주체가 직접 자산운용지침을 정하여야 한다.

③자산운용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투자결정 및 위험관리 등에 관련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2. 투자자산별 배분에 관한 사항
3. 자산운용 실적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
4. 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5. 자산운용과 관련된 부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6.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기금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0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 집행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31>

**제81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각 기금관리주체가 위탁하는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통합하여 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2조(기금운용의 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용실태를 조사·평가하여야 하며,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실태의 조사·평가와 기금제도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기금운용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제61조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국정감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관리주체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대상기관으로 한다.

**제84조(기금자산운용담당자의 손해배상 책임)** ① 기금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무원이 기금의 자산운용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기금관리주체 그 밖에 기금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 당해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이 있는 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5조(준용규정)** 제31조제3항·제35조·제38조·제39조·제45조·제49조·제50조 및 제55조의 규정은 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07.12.14, 2008.2.29>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방법 및 동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②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③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상법」 제17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원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출자, 사업,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9조까지, 제56조 및 제58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직변경)** ①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합명회사(合名會社)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조합원의 일부를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 합자회사(合資會社)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직변경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 내에, 조합 채권자에 대하여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 공고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 채권자가 제3항에 따른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조직변경의 결의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⑤ 채권자가 제3항의 기간 내에 조직변경의 결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직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⑥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직변경을 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해산등기를,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은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⑦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서 제2항에 따라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는 제6항에 따른 본점 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등기 후 2년이 될 때까지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서 책임을 진다.

##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설립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2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14, 2013.3.23>

1. "농업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말한다.
2. "공사관리지역"이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의 부지와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지역을 말한다.
3. "농지"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5. "농업법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6. "전업농업인(專業農業人)"이란 농업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지와 농업노동력을 보유한 농업인을 말한다.
7.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이란 농업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그 시설로부터 용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권리를 말한다.
8. "장기채"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위하여 정부 일반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에서 지급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아 생긴 채무와 국제금융기구(외국 정부 기금을 포함한다)로부터 차관을 받아 생긴 채무를 말한다.
9. "해외농업개발"이란 국외에서 농·축산물을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3조에 따른 방법으로 개발(개발을 위한 조사 및 개발에 따른 사업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29]

**제3조(설립)**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전문개정 2008.12.29]

**제18조(농지매매사업 등)** ① 공사는 전업농업인의 육성과 농업인이 아닌 자의 농지소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아니거나 전업(轉業) 또는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농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당 농지를 매입하여 전업농업인으로 육성하려는 대상자(이하 "전업농 육성 대상자"라 한다) 및 농업법인에게 우선적으로 매도하는 사업
2.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에게 해당 농지의 매입을 우선적으로 알선하는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이 해당 농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지원

② 공사는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에게 농지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의 선정기준 및 농지매매·알선사업자금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12.29]

##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2조(전업농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업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농지와 1명 이상의 농업노동력을 보유한 농업인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 벼를 주작목(主作物)으로 하는 농업인: 6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2. 그 밖의 농업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지

[전문개정 2009.6.29]

**제12조(전업농 육성 대상자 등의 선정기준)**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 1. 전업농 육성 대상자

- 가.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농업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업농업인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규모로 영농을 하고 있는 농업인일 것
- 나. 영농 의욕이 강하고 과학영농기술의 개발 등으로 농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일 것

### 2. 농업법인

- 가. 벼, 감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작목을 주작목으로 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의 세부적인 선정기준, 선정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29]

## ■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1.1>

###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 가. 이자소득
- 나. 배당소득
- 다. 사업소득
- 라. 근로소득
- 마. 연금소득
-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른 집합투자업 경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개정 2011.7.25>

③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전문개정 2009.12.31]

## ▣ 전자정부법

**제27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①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본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전자문서를 행정기관등에 송신하려는 경우에는 공인전자서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송신·수신하여야 한다.

② 발송시기 또는 도달시기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전자문서는 발송시기 또는 도달시기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송신하거나 수신하여야 한다.

##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뇌사판정 등)** ① 뇌사판정기관의 장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뇌사판정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뇌사판정 신청이 된 뇌사추정자(이하 "뇌사판정대상자"라 한다)의 상태를 파악한 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의사 2명 이상과 진료담당의사가 함께 작성한 뇌사조사서를 첨부하여 뇌사판정위원회에 뇌사판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뇌사판정의 요청을 받은 뇌사판정위원회는 전문의사인 위원 2명 이상과 의료인이 아닌 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뇌사판정을 한다. 이 경우 뇌사판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뇌사판정위원회는 뇌사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뇌사조사서를 작성한 전문의사와 진료담당의사를 뇌사판정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

게 할 수 있다.

④ 뇌사판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뇌사판정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뇌사판정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뇌사판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뇌사판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뇌사판정서 및 회의록을 제출받으면 그 사본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하고, 뇌사판정 신청자에게는 뇌사판정서 사본을 보내야 한다.

##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민간인통제선"이란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에서 군사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선을 말한다.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관련 고시

###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10호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목표가격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 목표가격은 2013년산부터 2017년산까지 쌀 80킬로그램당 188,000원으로 고정함을 결정·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14.1.14일 이후 2013년산부터 2017년산까지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목표가격은 이 고시에 명시된 금액으로 본다.
3. (고시 등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244호 ('13.10.7)는 폐지한다.
4.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11호**

**2013년산 쌀 80kg당 변동직접지불금 지급금액**

2013년산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174,707원/80kg으로 조사됨에 따라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산 쌀 80kg당 변동직접지불금 지급금액은 없음을 결정·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7년 2월 9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42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어촌지역

1.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2.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부 칙 <제2013-42호, 2013.5.16>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 (중전의 농어촌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440호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지역 중 이 고시에 따른 농어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 시행중인 사업은 그 사업에 한해 완료될 때까지 당해 지역을 이 고시에 따른 농어촌지역으로 본다.
3.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3월 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92호**

##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규정에 따라 생산단계 농산물(생산자가 저장하는 경우 포함, 이하 같음) 및 농산물 생산에 이용·사용되는 농지·용수·자재 등에 적용할 유해물질의 잔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① 농산물의 분류 및 품목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한 분류체계(이하 "농산물 분류"라 한다)를 적용한다.

② 출하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이하 "출하일 기준"이라 한다)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한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한다.

③ 농산물 분류에 따른 품목 및 성분별 출하 전 10일(시료 접수일 기준)부터 출하일까지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의 "농림수산물"코드명을 근거로 농림수산정보센터가 정한 "농산물표준코드(중분류)"(이하 "농산물 표준코드"라 한다)에 해당하는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목에 설정된 성분의 잔류허용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④ 제3항에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제3호 농산물 분류에 따라 선정된 감소상수를 별표 2의 제1호에 적용하여 산출한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감소상수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선정하여 적용한다.

1. 농산물 분류의 해당 품목에 설정된 해당 성분의 감소상수를 적용한다. 다만, 농산물 표준코드에 해당하는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농산물 표준코드에 따른 감소상수를 우선 적용하며, 농산물 표준코드에 해당하는 분류가 없고 농산물 분류상 해당 품목에 동일 성분의 감소상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최저 감소상수를 적용한다.
2. 제1호에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이 속하는 농산물 분류 중 소분류에서의 최저 감소상수를 적용한다. 다만, 인삼을 제외한 근채류의 경우에는 인삼의

감소상수를 제외한 근채류 중 최저 감소상수를 적용한다.

3. 제2호에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이 속하는 농산물 분류 중 대분류에서의 최저 감소상수를 적용한다.
4. 제3호에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농산물 분류 전체의 최저 감소상수를 적용한다.
- ⑤ 출하 10일 이전에 시료를 접수한 경우 또는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의 허용기준 변경 등으로 출하일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감소상수를 별표 2의 제1호에 적용하여 산출한 기준을 적용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농산물에 잔류하는 농약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제2호에 따라 출하연기 기간 및 출하 가능성을 산정하여 활용한다.
- ⑦ 제6항에 따라 산출한 출하연기 기간이 3개월(90일 기준) 이상이거나, 생산자가 저장하는 농산물에 적용한 경우에는 해당 농산물의 출하연기 기간 종료 전에 시료를 수거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생산단계 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출하연기 기간 등을 재산정한다. 다만, 동절기에 시료수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기간 경과 후에 실시하며, 출하연기 기간이 6개월(180일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매 6개월 간격으로 실시한다.
- ⑧ 콩나물, 숙주나물 등 생육기간이 짧아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한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농산물의 중금속 잔류기준)** ① 생산단계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의 잔류기준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농산물의 기타 유해물질 잔류기준)** 생산단계 농산물에 대한 곰팡이독소, 방사능핵종의 잔류기준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농지, 용수, 자재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① 농산물 생산에 이용·사용되는 농지·용수·자재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농지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토양오염 우려기준"

을 적용한다. 다만, 「지적법」의 지목과 다르게 작물이 재배되는 경우에는 실제 작물의 재배형태(논, 밭 또는 과수원 등)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2. 용수 중 하천수·호소수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수·호소수 기준 중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을 적용한다.
3. 용수 중 지하수는 「지하수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하수 수질기준의 농어업용수 중 "특정유해물질 기준"을 적용한다.
4. 자재 중 비료는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비료공정규격」을 적용한다.

#### 부 칙 <제2013-92호, 2013.4.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8월 1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2014년 2월 일 인쇄

2014년 2월 일 발생

발행처\_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주 소\_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전 화\_ 044-201-1776~7

팩 스\_ 044-868-9420

<http://www.mafra.go.kr>

인 쇄\_ **한라기획**

전 화\_ 044-868-7334~5

팩 스\_ 044-868-7336

E-mail \_ [hanra503@naver.com](mailto:hanra503@naver.com)